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11-1611000-001052-14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2010. 5

국 토 해 양 부

목 차

I.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고	5
II. 유출지하수 / 굴착행위 / 사후관리	65
III. 이행보증금 / 원상복구	93
IV. 지하수 수질	119
V. 시공업 / 영향조사기관 / 정화업	129
VI.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163
VII. 기타	175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I

지하수개발 · 이용 허가/신고

1 다수 공동명의 토지에 지하수개발시 토지사용승락

■ 질의내용 ■■■■

- 3인이 공동명으로 되어 있는 토지에 지하수 개발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 명의 토지사용 승락을 받지 못한 경우 지하수 개발 가능 여부

■ 답변 ■■■■

- 이러한 경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지하수법 뿐만 아니라 「민법」, 「물권법」 등 타 법률에도 없음.
- 따라서, 가급적이면 토지소유자 전체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 규정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지하수개발·이용신고 등)

① ~ ② (생략)

③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원상복구계획서

2 타인 토지에 지하수개발시 토지사용승낙서

■ 질의내용 ■■■■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에 있어 소유자가 연명으로 되어 있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에 지하수를 개발을 위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경우 인감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승낙서에 사인이나 도장만으로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의 구비서류에는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에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는 계약서, 사용승낙서, 사용동의서 등 토지소유권자가 사용을 허락한 서류를 의미함.
- 토지사용승낙서에 인감첨부 여부는 지하수법에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지하수법 제3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됨.
- 따라서, 인감 첨부 여부는 제출된 증명서류의 사실관계의 명확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관련 규정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지하수개발·이용신고 등) ① ~ ② (생략)

③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제3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지상권 설정자에 대한 토지사용승락

■ 질의내용 ■■■■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시 개발자와 소유자가 다를 때는 그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데, 만약 그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지상권 설정자에게도 토지사용승낙서 혹은 차후에 지하수의 권리 등을 주장할 수 없도록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 답변 ■■■■

- 질의 내용 중 "토지사용승낙서"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제1호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것으로 판단되며, 지상권이 이미 설정이 된 토지에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할 경우에는 지상권자와도 토지사용에 대한 동의, 협의 등을 통해 향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 규정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지하수개발·이용신고 등)

① ~ ② (생략)

③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원상복구계획서

4 공동소유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

■ 질의내용 ■■■■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제출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타인의 토지인데 공동소유로 되어있는 경우 공유자들의 승낙서와 인감을 모두 제출해야 되는지 여부

■ 답변 ■■■■

- 상가 등 구분소유로 되어 있는 집합건물을 제외한 다수인 소유 토지 등의 사용승낙확인서 징구시 모든 소유자(공유자 포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또는 신고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반드시 이를 징수해 놓아야 향후 있을 지도 모를 다툼 등에 대비할 수 있음. 다만, 상가 등 구분소유로 되어 있는 집합건물과 같은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용됨.

관련 규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결의함으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5 상가건물에서 지하수개발시 토지사용승낙

I 질의내용 IIII

-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가 접수되었는데, 상가 건물이고 각 상가별로 소유자가 있는 경우 "토지의 사용 및 수익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어떠한 것을 제출해야 하는지? 건물소유자 전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제출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공식적으로 조직된 조합이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동의서를 받아도 되는 것인지? 한편, 집합건물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주체가 달라지는지 여부

I 답변 IIII

- "토지의 사용 및 수익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건물소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함이 원칙이나,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 등의 동의서로도 갈음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동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전체 입주자의 3/4이상 참석과 참석자 3/4이상의 의결이 필요함(「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 참조).
- 집합건물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주체가 달라지는 것인지 여부는 집합건물일 경우에만 동의서가 필요하고 그 외 다수의 공유지분에 의한 다수의 소유자가 있을 경우 등과 같은 경우는 소유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함.

6 집합건물내 지하수시설의 명의변경

■ 질의내용 ■■■■

- 지하수법 제7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 명의변경을 신고할 경우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토록 되어 있는데, 이 첨부서류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없어 개발·이용 허가시 첨부서류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구 관내 ○○동의 복합주상건물이 경매로 소유권 일부가 "A"모씨에게 이전되었고, 이 대지 위에 있는 지하수공(허가건)의 명의변경을 위해 나머지 소유권자들의 동의를 구하려고 하나, 복합건물내 한 상가의 동의를 얻기가 불가능한 사항으로 현재 당해 대지상의 지하수공에 대해 명의변경을 신청한 사항임.
- 전체 토지지분 중 9할 이상의 소유권을 가진 "A"모씨가 동의가 불가능한 지분을 제외하고 동의서를 첨부할 경우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동의가 불가능한 지분을 제외한 소유자들의 공동명의로 신청할 경우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A"(토지에 대한 최대지분권자)의 명의로 명의변경 한 후 나머지 지분권자가 개별로 신청해올 경우 명의로 추가(공동명의로) 등재 가능 여부

■ 답변 ■■■■

- 상가 등 구분소유로 되어 있는 집합건물을 제외한 다수인 소유 토지 등의 사용승낙확인서 징구시 모든 소유자(공유자 포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또는 신고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반드시 이를 징수해 놓아야 향후 있을 지도 모를 다툼 등에 대비할 수 있음
- 다만, 상가 등 구분소유로 되어 있는 집합건물과 같은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용됨.

- 귀 질의와 같이 다수 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전체 소유자의 의사가 합치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이를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5조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6조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집합건물의 변경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공용부분에 "지하수의 개발·이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공용부분의 변경"인지, "공용부분의 관리"인지 여부에 따라 동의가 필요한 정도가 차이가 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소관부처인 법무부에 질의하기 바람.

관련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7 타인 토지에 지하수 개발시 토지사용승낙

■ 질의내용 ■■■■

-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수리 후 준공신고서 접수시 위치 지번의 소유자가 신고인이 아닌 것을 발견한 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토지소유자는 오래전에 사망하고 배우자나 자녀들은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처리방안은?

■ 답변 ■■■■

-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허위의 방법으로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제39조의 규정 및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따라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타인 소유의 토지에 지하수를 무단으로 개발·이용하는 자는 동 지하수시설의 원상복구는 물론 「형법」 등 관련법에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기존에 이루어진 지하수의 개발·이용신고의 수리도 취소가 되어야 할 것임.

관련 규정

【지하수법】

제3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8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정의

■ 질의내용 ■■■■

- 지하수법 제8조 관련,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중 하단 구비서류 3호에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는 무엇을 말하는지? 한편 증빙서류로 자기 소유의 토지인 경우 "토지대장" 혹은 "등기부등본"이 필요한지?

■ 답변 ■■■■

- 토지의 소유자일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즉 등기부등본 등을 말하며,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사용동의서" 등 토지소유권자가 사용을 허락한 증명서류 등을 의미함.
- 증빙서류로 "등기부등본"은 해당되나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등을 확인하기 위한 "토지대장"은 소유권이나 사용 동의서의 용도로 활용하기는 곤란함.

9 지하수 개발시 토지 소유관계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질의내용 ■■■■

- 등기부등본 갑구에 소유자 ○○중회 대표자 ○○○로 되어 있는 토지에서 대표자 ○○○ 본인이 자신의 농사목적으로 해당 부지에 지하수개발을 신청하는 경우 소유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 답변 ■■■■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인허가시 구비서류 중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의미함.
- 따라서 중회의 대표자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 제276조 규정에 의해 중회 총회나 정관, 규약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률전문가와 협의하시기 바람.

관련 규정

【민법】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각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 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10 유량계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 여부

■ 질의내용 ■■■■

- 당초 토출관 지름 65 mm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은 후 토출관과 연결되는 배관의 지름이 50 mm인 관계로 시설 준공과정에서 유량계를 50 mm로 설치한 경우 토출관 지름을 50 mm로 변경해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 양수능력의 기준 중의 하나인 토출관은 펌프와 연결되어 있는 배관을 의미하며, 귀 질의에서 토출관이 펌프와 연결되어 있는 배관이라면 유량계 설치 배관과는 무관하여 별도의 변경 절차는 현행법상 불필요함.

11 | 지하수시설의 명의변경 및 타인소유 지하수 시설의 사용

■ 질의내용 ■■■■

- "A"사가 공장의 공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의 토지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개발한 지하수관정(공업용)을 토지의 주인에게 명의이전(용도-공업용)이 가능한지 여부
- 위 질의에 의거하여 명의 이전이 된 후 기타 계약에 따라 "A"사가 토지 주인의 지하수를 공장의 공업용수로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A"사가 공장의 용수로 인근 주민의 생활용수 또는 농업용수를 유·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 타인의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 중이던 지하수 시설을 토지 주인에게 명의 이전하는 것은 지하수법에 따라 관할 시·군에 명의변경 신청을 하면 됨. 다만, 지하수의 이용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수질기준 및 허가/신고 사항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관할 시·군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에 대하여 "공적자원"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지하수의 합리적 개발과 보존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따라서 공적자원인 지하수를 개발하여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안되며, 무상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사실관계 및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당해 행위의 허가권자인 시장 또는 군수에게 문의하기 바람.

12 경매로 인한 토지소유권 변경시 지하수시설의 명의변경

■ 질의내용 ■■■■

-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지하수 시설이 위치한 토지 및 건물이 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변경되었으며, 당초 지하수 허가를 득한 자는 부도 후 해외도피(행방불명) 중에 있고, 토지 인수자는 지하수를 이용, 영업을 하고 있으며, 신축건물 준공단계에서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명의변경이 신청된 경우 소유권이전(토지등기부등본)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취소해야 되는지 여부

■ 답변 ■■■■

- 지하수개발·이용 시설물을 포함한 토지 및 건물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증명된다면 명의변경이 가능함.

13 토지 매매에 따른 지하수시설의 연장허가 주체

■ 질의내용 ■■■■

- "A" 회사가 지하수를 사용하던 중 "B" 회사에 매각되었으며, "B"회사는 공장 전체를 허물고 토지정리를 하였고, 그 후 "C"회사가 이 회사를 다시 매입한 상태에서 토지정리가 되어 형체를 알아 볼 수 없는 지하수시설의 연장허가 처리 방법은?

■ 답변 ■■■■

-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명의를 변경될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변경허가(명의자변경) 통보를, 사용을 종료할 경우에는 종료신고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함.
- "A"회사와 "B"회사 간의 토지 매매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내용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지하수 시설에 대한 명의변경 후 종료신고(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타당함.

14 양수능력 산정기준

■ 질의내용 ■■■■

- 연장허가 대상인 지하수 시설이 지하수이용 과정에서 모터펌프와 무관하게 취수량이 자연 감소한 경우 양수능력 산정은 양수시험 결과를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터펌프 및 설비사양 기준으로 하는지?

■ 답변 ■■■■

- 지하수법에서 허가, 신고대상의 구분은 양수시험에 의한 취수량이 아니라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동력장치, 토출관의 지름과 깊이 등에 비추어 보아 당해 시설을 이용하여 양수할 수 있는 최대 취수량임.

15 동일사업장에서의 양수능력 합산

■ 질의내용 ■■■■

- 기존 건물 신축시 지하수를 75톤 가량 개발한 후 기존 건물의 인접 필지에 2동 건물을 추가 신축하기 40톤 가량 지하수를 개발코자 하는 경우 기존 지하수시설과 추가개발 지하수시설이 130m 정도 떨어져 있어도 동일사업장으로 적용하여 허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주변의 다른 사람이 신고하고 개발한 지하수를 동의를 받아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 "동일사업장"이란 특정사업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공간적 범위로서 지번이나 인위적 울타리 등만으로 획일적으로 그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인·허가시 설정된 범위, 당해 사업내용 등도 함께 고려하여 동일사업장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로서, 질의내용으로만 볼 때 동일사업장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관할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하기 바람.
- 지하수는 필요로 하는 개발·이용자가 용도에 적합하게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하수의 보전·관리 차원에서 타인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관할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하기 바람.

16 다수의 농업용수 개발시 양수능력 합산

■ 질의내용 ■■■■

-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160 m 간격으로 관정 3공을 개발시 동일사업장으로 보아 양수능력 합산대상인지 여부

■ 답변 ■■■■

- "동일사업장"이란 특정 사업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공간적 범위로서 지번이나 인위적 울타리 등만으로 획일적으로 그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인·허가시 설정된 범위, 당해 사업내용 등도 함께 고려하여 동일사업장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라고 할 수 있음
- 질의하신 내용을 볼 때 일일 150 톤 이내이고 개발·이용자를 "A", "B", "C"로 다르게 하는 경우는 신고로 처리하여도 타당할 것 같으나, 자세한 사항은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17 서로 다른 용도로 지하수개발시 양수능력 합산

■ 질의내용 ■■■■

- 기존 생활용으로 관정개발 후 농업용 관정을 추가 개발 시 양수능력 기준을 생활용과 농업용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 답변 ■■■■

- 동일사업장에서 생활용과 농업용 지하수를 개발할 시에는 양수능력합산 대상이며 양수능력기준을 생활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따르는 것이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 측면에서 타당함.

18 양수능력의 합산

I 질의내용

- 과수재배 목적으로 지번이 다른 동일인 소유의 토지에 80m 정도 이격하여 2공의 관정을 개발하려고 하는 경우 양수능력 합산 여부

I 답변

- "동일 사업장"이란 "특정사업 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공간적 범위로서 지번이나 인위적 울타리 등만으로 획일적으로 그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인·허가 시 설정된 범위, 당해 사업내용 등도 함께 고려하여 동일 사업장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으로만 볼 때 양수능력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현지사정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임.

(유사질의)

- 기존 신고된 지하수시설의 물량이 부족하여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동일 토지소유자의 토지에 2공의 지하수를 개발시 시설간 거리가 50m를 초과할 경우 양수능력을 합산하여도 되는지 여부

(답변)

- 신규 개발지하수로 기존 개발 지하수의 부족분을 채우는 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수능력을 합산하여야 함.

19 하천구역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

■ 질의내용 ■■■■

- 지방2급 하천 제내지에 지하수 취수를 목적으로 관정 설치시 「하천법」 제33조 적용 여부

■ 답변 ■■■■

- 하천구역 내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에는 「하천법」에 따라야 하며, 하천구역 외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에는 지하수법을 따르며, 하천구역으로부터 300 m 이내의 경우에는 하천관리청과 협의 후 협의자료 및 협의 이행결과를 첨부하여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

관련 규정

【지하수법】

제7조의2(하천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①시장·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하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하천의 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은 당해 지하수개발·이용이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수량·취수기간의 제한 및 취수금지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의 관리청은 당해 허가로 인하여 「하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득하천사용자가 손실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2. (생략)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20 하천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

| 질의내용 ||||

- 하천제방에서 50 m 정도 이격된 공장에서 6 m 심도의 집수정을 설치하여 일 300톤 정도 취수하는 경우, 이를 지하수로 보고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시설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지하수로 보지 않는다면 하천관리청과 어떤 형식의 인허가가 필요한지?

| 답변 ||||

- 지하수로 보는 것이 타당함. 한편, 하천구역 내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에는 「하천법」을, 하천구역 외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에는 지하수법을 따르며 하천구역으로부터 300 m 이내의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당해 하천의 관리청과 협의한 후 협의자료 및 협의이행결과를 첨부하여 지하수법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함.

21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시설의 처리

■ 질의내용 ■■■■

-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 기준은?
- 허가기간 만료로 인해 자동으로 허가가 취소되는 것이지, 별도의 허가취소절차가 필요한지?
-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연장허가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검토 후 연장허가서 교부가 가능한지? 이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 적용기준은?

■ 답변 ■■■■

- 지하수법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5년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 6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따라서,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의 이용은 허가받지 않은 지하수의 이용으로 보아 지하수법 제37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동 사항을 원칙적으로 판단하면 허가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기간이 종료되어 그 허가기간 이후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단계로서 "원상복구 명령 및 지하수법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벌칙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별도의 허가의 취소절차도 필요없는 사안임.

- 원칙적으로는 연장허가서 재교부가 가능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관찰 지자체의 장이 불가피한 상황 등 여러 가지 사항 등을 판단하여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되며, 벌칙은 상기 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규정

【지하수법】

제7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시장·군수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본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제3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의 만료일 30일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 6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유효기간 만료전 연장허가 신청

■ 질의내용 ■■■■

- 유효기간이 2009년 11월 30일까지인 지하수 시설에 대하여 2009년 2월에 유효기간 연장 허가를 받고 유효기간 연장 날짜를 종전대로 2009년 11월 30일부터 5년으로 하여 2014년 11월 29일 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 날짜로 2009년 2월부터 5년으로 받아야 하는지?

■ 답변 ■■■■

- 지하수법 제7조의3제1항은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에서는 유효기간의 만료일 30일전까지 최근 6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함에 비추어 볼 때 유효기간 연장허가의 기준일은 당초 허가기간의 만료일로부터 5년간 허가를 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신청기간은 당초 만료일 다음일 기준으로 최대 6월전까지가 될 것임.
- 즉, 당겨서 신청할 수 있으나 6개월을 훨씬 초과하여 신청할 있는 것은 아니며, 참고로 지하수영향조사서는 허가기간 연장시점에서의 지하수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므로 연장허가일 6월 전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임.

관련 규정

【지하수법】

제7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의 만료일 30일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 6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법 개정 이전 시설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I 질의내용 IIII

- 1996년 신고한 시설로서 양수능력상 허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 5년까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시설로 계속 연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연장허가신청을 하지 않아 불법 시설이 되는 건지?

I 답변 IIII

- 유효기간 제도는 2001년도 지하수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도이며,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하여지지 않았다면 유효기간은 2001년도부터 5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연장허가신청을 하지 않으면 무허가 시설로 관련규정(벌칙)에 의해 처리됨.

관련 규정

【지하수법 부칙(2001.1.16)】

① (생략)

②(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유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으로 본다.

24 유효기간 연장허가 미이행시 처벌

■ 질의내용 ■■■■

- 목욕업을 하는 사업자로 2002.12.24일자로 "A"사로 부터 목욕탕 건물을 분양받아 영업을 하고 있던 중 최근에 구청으로부터 목욕탕에 사용하는 지하수시설("A"사에서 2002.7.22 구청에 허가를 받은 시설로 유효기간은 2002.7.22 ~ 2007.7.21임)에 대하여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 고발 및 원상복구명령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바, 지하수법 제37조제1호 및 지하수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처분대상은 지하수 개발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지?

■ 답변 ■■■■

-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의 이용은 허가받지 않은 지하수의 이용에 해당되어 지하수법 제37조제1호 규정의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또한, 시장·군수는 불법시설물에 대해 지하수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할 수 있음.
- 유효기간 이후의 지하수 이용은 현재의 지하수 이용자가 처분 대상이 됨.

관련 규정

【지하수법】

제7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시장·군수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5조(원상복구 등)

① ~ ② (생략)

③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의 만료일 30일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 6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5 신고 시설의 설치 제한 등

■ 질의내용 ■■■■

- 이미 허가된 허가시설의 취수량이 문제된다고 신고대상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지?
- 지하수개발·이용신고 후 착공을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로 볼 수 있는지?

■ 답변 ■■■■

- 지하수법 제8조제3항에 의하면 신고시설이라 할지라도 지하수법 제7조제3항에 의한 허가 제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후 신고시설의 취수량 및 취수기간 제한 및 이용중지·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지하수법 제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대상에 지하수개발·이용신고 후 착공은 포함이 되지 않음.

관련 규정

【지하수법】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① ~ ② (생략)

③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채취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수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시설물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하수의 적정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8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① ~ ② (생략)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이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개발·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해당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조사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
3.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
4.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3(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생략)

②법 제9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광업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탐광
2. 굴착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지하수조사(국방·군사용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지열을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열냉난방시설(이하 "지열냉난방시설"이라 한다)의 공사로서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공사

26 신고시설에 대한 지하수영향조사

■ 질의내용 ■■■■

- 지하수법 제8조제3항을 보면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에 대하여 제7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7조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이용 중지 및 공동 이용명령 등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지하수영향조사는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하는 것인지 또는 지하수 신고한 사람이 하는 것인지?

■ 답변 ■■■■

- 신고대상은 지하수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가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유사질의)

-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의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지하수 개발신고를 하였는데 관련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고내용이 지하수법 제7조제3항 제1호 중 지하수개발로 인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지하수 개발행위 신고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또한 신고 접수한 후 지하수개발공사를 시행한다면 지하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답변)

- 지하수 개발·이용이 지하수법 제7조제3항 중 "지하수의 채취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수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시설물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관할 시장·군수는 지하수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위 경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지하수개발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됨.

관련 규정

【지하수법】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① ~ ② (생략)

③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채취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수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시설물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자연생태계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지하수의 적정관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8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① ~ ② (생략)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이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을 제한할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개발·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27 택지개발 사업에 있어 동일사업장의 의미

■ 질의내용 ■■■■

- 택지개발지구를 1~5블럭으로 나눈 상태에서 블럭별로 건설사가 다르고 또한 건축허가를 블럭별로 득한 상태인 경우 지하수개발 신고 관련 동일사업장에 대한 구분을 블럭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택지개발지구 전체를 하나의 동일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 답변 ■■■■

-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의하면 동일 사업장 안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수능력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합산한 규모에 따라 해당 시설이 신고대상인지 또는 허가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택지공급계획 등에 의거 블럭별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블럭별로 건설사가 다르며 건축허가를 블럭별로 받은 경우라면 개별사업장으로 보아야 될 것으로 판단되나, 동일 블럭에서 2개 이상의 주택건설회사가 각각 관정을 개발하는 경우라면 전체 양수능력을 합산하여야 할 것임.

관련 규정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지하수개발·이용신고) ① ~ ④ (생략)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능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수능력을 합산한다.

1. 지하수를 이미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가 당해 시설의 당초의 양수능력을 증가시키는 경우
2. 동일사업장 안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8 비상급수용 지하수 대상범위

I 질의내용 IIII

- 지하수법 제8조에 의하면 군사시설, 비상급수시설, 재해 등 대비용으로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신고로 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있는 바, 민방위용 비상급수시설 외에 일반적인 지하수 용도분류에서 민방위용과 한발 대비용 농업용 관정 개발도 해당되는지 여부

I 답변 IIII

-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동 조항은 재해를 대비한 개념이 아니라 재해가 발생하여 지하수시설물을 허가를 받아 개발·이용할 경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함에 따라 관정 개발의 실효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허가기간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해 주기 위함임. 이 경우 재해 등 긴급사태가 끝난 이후에는 허가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일 경우에는 허가를, 신고시설일 경우에도 "토출관직경이나 양수능력" 등 신고시설에 적합한 시설로 변경하여야 함.

관련 규정

【지하수법】

제8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재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9 밀폐형 상부보호공의 설치 기준 등

■ 질의내용 ■■■■

- 상부보호공을 설치할 수 없는 지점에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위해 표준도 “사”형으로 시공하고 준공신고 하였으나, 보호공 시설을 환경부장관이 인정 하는 제품을 쓰던지 아니면 인정하는 제품을 그대로 만들거나 시설 하라고 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지하 3 층(주차장)에 주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준도 "마"형으로 설치할 수 없는지?
- 신고시 설치도(표준도 “사”형)는 지하수 개발 후 변경 할 수 없는지?
- 반드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제품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제품을 모방/제작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 상부 보호공을 꼭 정사각형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 답변 ■■■■

- 표준도 "마"형은 정착된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업용 지하수 개발·이용 시 표준도이므로 적용이 곤란함.
- 지하수보전·관리차원에서 표준시설도 변경은 변경신고를 통해 변경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변경 전후의 시설도 및 사진 등을 첨부하면 됨.
- 밀폐식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주관부처인 환경부로 문의하기 바람.
- 표준시설도는 단면도이므로 원형으로 설치해도 무관하며 주어진 표준시설도 내에서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시기 바람.

30 상부보호공의 재질

■ 질의내용 ■■■■

- 생활용으로 굴착깊이 16 m, 굴착지름 20~50 mm, 양수능력 30 톤/일, 지상 모터펌프로 0.25~0.5 HP, 토출관안쪽지름 50 mm인 지하수시설에 대하여 상부보호공의 재질로 조립식판넬을 사용해서 준공해도 되는지 여부

■ 답변 ■■■■

-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별표1](환경부령)에 의하면 "상부보호공은 콘크리트, 합성수지 등 물의 침투가 어렵고 내부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합성수지를 사용할 경우 재질, 강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없기 때문에 지역 여건상(보온성 등이 특히 필요할 경우 등) 필요하다면 인허가 담당자가 적절히 판단하시기 바람.

31 양수능력 결정시 양정고 산정 기준

■ 질의내용 ■■■■

- 지하수 개발 신고와 관련하여 양수능력 검토 시 양정고를 계산할 때 펌프의 설치심도(펌프와 지표면의 높이)에 지표면에서 저수조까지의 높이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심정펌프와 저수조사이에는 추가로 설치된 펌프가 없음)

■ 답변 ■■■■

- 양정고는 펌프의 설치심도에서 지하수를 양수하고자하는 지점(지상의 저수조)까지로 계산하면 됨.

32 허가시설을 신고시설로 변경 여부

I 질의내용 IIII

- 우리 시에서 개발한 관정으로서, 당초 허가시설로 개발하였으나 농촌지역의 인구가 차츰 감소하여 지하수 사용량 당초 신고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 신고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바 시설을 변경하지 않고도 신고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I 답변 IIII

-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의 규정은 지하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중 양수능력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하수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시설로 되는 경우에 지하수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규정한 사항으로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양수능력의 변경없이 단지 취수량의 감소 또는 이용량의 감소의 이유로는 허가시설이 신고시설로 될 수 없음.

관련 규정

【지하수법】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① ~ ⑤ (생략)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지하수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33 신고시설의 위치변경시 변경신고 여부

■ 질의내용 ■■■■

- 농업용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시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임야도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표시 위치의 정밀도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 당초 신고한 위치와 동일 지번내 토지에서 위치를 변경할 경우 변경신고할 필요가 없는지, 아니면 별도의 거리 규정이 있어 이를 벗어난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지?

■ 답변 ■■■■

- 위치 표시의 정밀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은 현행법상에 없음.
- 위치변경의 경우에는 당초신고 시설은 종료신고 등 조치하고, 변경되는 지점의 지하수시설에 대해서는 신규로 신청하여야 함.

34 경매로 인한 소유권 변경시 변경신고 여부

I 질의내용 IIII

- 주상복합건물 목욕탕에 지하수시설을 입주자대표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개발·이용하던 중 경매로 영업권 및 토지지분을 취득하였을 경우 변경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유권 문제로 분쟁이 있음) -영업권리만 양도되었을 경우와 목욕탕 전체의 영업권 및 토지를 취득하였을 경우-
- 변경신고서 접수시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는 무엇이며, 재차 토지소유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최초 개발자의 양도증 하나만으로 가능한지, 기타 필요서류가 있는지?

I 답변 IIII

- 경매에 의한 부지 매입 시 토지, 건물, 기타 재산권 등에 대한 일괄 경매일 경우에는 해당 부지에 존재하는 지하수시설의 소유권이 자동으로 승계될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경매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건물경매 낙찰에 의한 건물 내의 지하수시설에 대한 변경신고(명의변경)를 위해서는 이전 신고인의 동의 또는 지하수시설 소유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야 함.
- 당초 신고인의 동의가 있다면 당초 신고인의 서명 또는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당초 신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하수시설의 소유권에 대한 법원판결자료 등을 첨부하여 변경하면 가능함.

35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시 변경신고 등

■ 질의내용 ■■■■

- 공장 부도로 경매에 의해 부지를 매입하고(부동산소유권 이전됨) 지하수관정을 사용할 시 변경신고서의 당초 신고인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하는지?
- 경매 매입 시 지하수관정 소유권 자동 승계가 되는지?
- 부도전 전소유주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와의 공사대금에 관련하여 준공완료시까지 공사대금 지불 약속(미지불시 폐공처리 하기로 함)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여 준공되었으나 전소유주가 부도가 나서 시공업자가 폐공처리 하려고 하는데 적법 여부

■ 답변 ■■■■

- 지하수개발·이용변경신고시(명의변경) 당초신고인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하나, 해당 지하수시설에 대한 소유권 증명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는 당초신고인의 서명 날인 없어도 명의변경이 가능함.
- 경매에 의한 부지 매입 시 토지, 건물, 기타 재산권 등에 대한 일괄 경매일 경우에는 해당 부지에 존재하는 지하수시설의 소유권이 자동으로 승계될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경매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전소유주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와의 공사대금으로 인한 지하수개발시설의 원상복구처리 여부는 계약관련법 등에 의거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지하수시설이 방치될 개연성이 있을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하수법 적용 대상이며 구체적인 것은 사실관계 및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당해 행위의 허가권자인 시장 또는 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36 용도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I 질의내용

- 지하수 생활용수(가정용) 음용수로 신고하고 준공검사를 마치고 필증까지 받았는데 (주)○○이라는 소주업체가 식품용으로 사용하고자 소유자 명의 변경 및 공업용수(자유입지업체) 음용수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지하수법에 적법한지의 여부

I 답변

- 생활용(가정용)으로 지하수개발·이용 신고한 시설에 대하여 용도변경(생활용수(가정용)-공업용수(자유입지업체))은 지하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에 의하여 변경신고 할 경우 적법함. 다만, 허위로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한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39조제1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관련 규정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지하수개발·이용신고)

① ~ ⑤ (생략)

⑥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신고인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2. 지하수개발·이용의 용도를 변경(음용수 사용여부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7 경매로 인한 변경신고시 구비서류

■ 질의내용 ■■■■

- 복합상가 지하에 있는 목욕탕을 경매로 낙찰 받았으나 경매 내용에 지하수 관정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태이며, 전 소유자인 신고인은 별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변경 신고를 위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경매 서류를 첨부하여 전 소유자와 상관없이 신고서에 경매 낙찰자가 변경 신고인만 날인하면 되는지, 아니면 전 신고인과 경매 낙찰자간의 지하수 관정에 대한 매매서류를 작성하고 신고서에 당초 신고인과 변경 신고인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복합상가의 분할 등기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 승락서를 받아 첨부하고 신고서에 변경신고인만 날인하여야 하는지?

■ 답변 ■■■■

- 건물경매 낙찰에 의한 건물 내의 지하수시설에 대한 변경신고(명의변경)를 위해서는 이전 신고인의 동의 또는 지하수시설소유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야 함. 변경 신고를 할 때에는 당초 신고인의 날인이 필요하며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지하수관정에 대한 매매서류 등을 첨부하면 될 것임.

38 지하수개발 위치변경에 따른 벌칙

■ 질의내용 ■■■■

- 지하수개발을 위해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고 담당부서에 신고증을 받고, 굴착을 하던 중 굴착지점이 신고한 지번과 다른 경우(현 굴착지점이 신고한 지번 바로 옆 지번이고 소유주 또한 신고인과 동일함) 지번착오로 인해 신고위치 지번을 잘못 표기하였는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 원상복구를 하고 다시 신고하면 되는지, 현 굴착공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담당공무원이 굴착전(신고증 교부전) 현장답사를 하였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

■ 답변 ■■■■

-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지번을 잘못 표시하였는지 아니면 고의로 기재하였는지를 확인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착오를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고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통해 고의로 기재한 것이 아님이 확인되고 현지 여건상 착오가 있을 수 있음이 확인 가능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원칙적으로는 원상복구 대상이나 착오로 굴착한 것이 입증 된다면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굴착공을 제반 신고절차 이행 후 사용함이 국가 전체적인 이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만, 이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인한 이익"과 "원상복구 후 재굴착으로 발생한 비용 - 법 집행의 형평성 등에 의한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의 행정력 초래 등에 의한 손실"과의 비교를 통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는 관할 지자체에서 현지여건, 착오임이 명백한 입증 자료 등을 통해 결정할 사항임.
- 현행 지하수법에는 굴착 전에 현지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아니함.

39 굴착깊이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 질의내용 ■■■■

- 조금 더 물이 나오는 깊이까지 내려간 이후에 굴착깊이를 변경신고해도 되는지? 또, 만약 사후 변경이 위반이라면 어떤 법률 조항으로 어떤 벌칙이 있는지?

■ 답변 ■■■■

-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제3호 규정에 의해 굴착깊이는 굴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지하수법 제40조 제1호의2 규정에 의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관련 규정

【지하수법】

제13조(지하수개발·이용신고)

① ~ ⑤ (생략)

⑥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신고인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2. 지하수개발·이용의 용도를 변경(음용수 사용여부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40 종료신고에 따른 원상복구 시점

I 질의내용 IIII

- 시·군에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 및 굴착행위 종료신고를 할 때 종료신고를 하고 신고가 수리되면 지하수개발·이용행위 및 굴착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고난 후 종료신고 하여도 되는지 여부

I 답변 IIII

- 원상복구와 관련하여 지하수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제5의2호에서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한 경우로서 동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 및 굴착행위 종료신고가 수리된 후 원상복구를 하면 됨.

관련 규정

【지하수법】

제15조(원상복구 등)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 동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5.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5의2.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토지를 굴착한 경우로서 동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료한 경우

41 | 종료신고 없이 원상복구시 처벌

■ 질의내용 ■■■■

- 지하수를 사용함에 있어 재개발, 또는 건축물 신축 등의 행위로 인해 여러 개의 지하수 공이 종료신고를 하지 않고 폐공되었을 시, 여러 개의 공에 대해 한 개씩 개별적으로 행정처분(과태료)이 부과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동일사업장내로 보고 여러 개 공에 대한 하나의 사용자로 보고 1공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 지하수법에서 인·허가는 개별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과태료도 개별 시설을 대상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42 종료신고 행위 주체

■ 질의내용 ■■■■

-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시 반드시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등록을 한 자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지하수 소유자가 직접공사(폐공)하여 신고해도 되는지 여부

■ 답변 ■■■■

- 지하수개발·이용을 종료하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던 자가 관할 시·군·구에 이용 종료신고를 하여야 하며,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이고 굴착지름이 75 mm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 공사"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니더라도 시행할 수 있음.

43 지하수개발 신고 후 준공신고 기한

■ 질의내용 ■■■■

-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해당관청에 지하수개발 이용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하여 임시로 사용하다가 현장 여건상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신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현행 법령상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를 제출하고 관정을 개발한 후 언제까지 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답변 ■■■■

-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 준공 후 준공한 날로부터 1월 이내 신고하여야 함.

관련 규정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준공신고)

① (생략)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공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4 종료신고후 계속 사용

■ 질의내용 ■■■■

□ 종료신고를 잘못하여 신고필증이 나온 후 계속 사용시 절차는?

■ 답변 ■■■■

□ 지하수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의해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나,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고나 신고를 하고 계속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예외에 해당됨. 따라서 지하수종료신고를 하고 원상복구 대상시설에 해당이 되더라도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에 해당이 된다면 지하수법에 따라 다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가 있음.

관련 규정

【지하수법】

제15조(원상복구 등)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 동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략)
5.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원상복구의 예외 등) ①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45 준공신고

■ 질의내용 ■■■■

-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체와 연락이 안 되어 준공신고를 할 수 없다고 신고인으로부터 민원이 있는데 시설만 되어 있다면 시공업체를 경유(업체날인, 준공시설도, 공사사진)하지 않고 준공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동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조제2항은 시장·군수는 신고한 내용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은 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서에 "준공시설도, 수질검사서 및 현장사진"을 첨부하도록 하여 시장·군수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준공시설도 및 현장사진 등이 첨부되지 않은 채 준공수리하는 것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임.

관련 규정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준공신고)

① (생략)

②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시설도
2. 수질검사서. 다만, 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월 안에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현장사진

46 가정용 지하수의 확인방법

I 질의내용 IIII

- 2005년 개정된 지하수법에는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시 세부용도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 개정 이전에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시에는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음용수로만 구분이 되어 있었음.
- 그러나 최근 개정된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제3호는 "생활용 중 가정용(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으로 1일~~"라고 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서류(신고서 등)상으로 가정용 지하수에 대하여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서류상으로 구분할 수 없다면 각 지하수 관정을 실사를 거쳐 확인을 하여야 하는지?

I 답변 IIII

- 가정용은 개인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로서 일반가정에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설을 말하며, 관련 서류 중에서는 지적도, 위치, 좌표, 전산지도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고, 서류상 구분할 수 없다면 각 지하수관정에 대한 전화문의, 실사 등을 하여 확인하여야 함.

관련 규정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법 제30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2. (생략)
3. 생활용수 중 가정용(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으로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47 수족관 사용 지하수의 용도 구분

■ 질의내용 ■■■■

- 회집 및 활어를 취급하는 도매시장의 수족관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되는 지하수의 용도별 분류는 생활용수인지 어업용수인지 여부

■ 답변 ■■■■

- 현행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하면 지하수개발·이용 용도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어업용수로 구분이 되며, 생활용수는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농·어업용수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사용되는 지하수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지하수업무수행지침(2006, 건설교통부)」 "2.3.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에 의하면,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지하수는 생활용수로 구분하고 있음.
- 어업용수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수산업법」 제2조에서 "수산업이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회집 및 활어를 취급하는 도매시장의 수족관 용수는 「수산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수산업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귀 시에서 질의하신 회집 및 활어를 취급하는 도매시장의 수족관 용수는 지하수법에 의한 생활용수로 분류된다고 할 것임.

관련 규정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지하수개발·이용 용도)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제1항 및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 용도를 표시하여야 하며, 용도 구분시 음용수 사용 여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1. 생활용수 :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지하수.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지하수를 제외한다.
2. 공업용수 : 공장 그 밖의 생산업체 등에서 제품의 생산 및 설비의 가동에 사용되는 지하수
3. 농·어업용수 :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사용되는 지하수

【수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48 지하수 용도 구분

■ 질의내용 ■■■■

□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농어촌관광휴양지(관광농원)사업자로 지정을 받아 관광농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농원의 주요시설은 농장(특용작물 및 과수화훼)으로서 부대시설은 골프연습장, 식당 등이 있고 관광농원의 특성상 조경수가 많이 있음(광역상수도 공급됨). 위 내용과 같이 관광농원 부지내에 농장 및 조경수에 사용할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하는데 지하수법 시행령에 의한 개발·이용 용도를 무엇(농업용수, 생활용수)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 답변 ■■■■

□ 지하수개발·이용 용도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어업용수로 구분을 하고 있으며, "지하수업무수행지침(2006, 건설교통부)"에서는 각각의 용도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음. 위 질의와 같이 농장 및 조경수에 사용할 목적이라면 지하수의 용도는 농업용으로 분류 할 수 있으나 농업용 외에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생활용을 겸용하여 사용하신다면 생활용으로 분류가 됨.

관련 규정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지하수개발·이용 용도)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제1항 및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 용도를 표시하여야 하며, 용도 구분시 음용수 사용 여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1. 생활용수 :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지하수.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지하수를 제외한다.
2. 공업용수 : 공장 그 밖의 생산업체 등에서 제품의 생산 및 설비의 가동에 사용되는 지하수
3. 농·어업용수 :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에 사용되는 지하수

49 시설변경으로 인한 인·허가 미이행시 벌칙규정

I 질의내용

- 동력장치 1 HP, 토출관직경 40 mm, 펌프설치심도 60 m, 양수능력 90 톤/일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신고를 하고 사용하던 중 5 HP(3.7 kw) 가량의 펌프로 임의 교체하여 76m 심도에 설치하고 사용하다가 적발되었으며, 유량계 검침 결과 월 5,000 ~ 7,000톤 정도 사용하였고, 양수능력을 검토했던 결과 170~200 톤/일정도 양수능력이 산정되었음(나머지 시설설치 내역은 신고시와 동일함). 이 경우 적용 가능한 벌칙 조항은?

I 답변

- 지하수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해 당해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면 될 것이나, 만일 동 시설의 변경으로 인하여 허가시설로 이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 시설의 이용종료 신고 후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
-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임의로 변경한 시설이 허가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였다면,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됨.

관련 규정

【지하수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50 미신고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 질의내용 ■■■■

- 신고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한 경우 시공업체와 관련하여 과태료 (법 제22조제4항, 제37조제10호, 39조제7호2)를 부과하려 하는데,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 답변 ■■■■

-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하였을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39조제1호 및 제7의2호 규정에 의해 미신고자 및 시공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관련 규정

【지하수법】

제39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지하수법 제8조 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자
- 7의2.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51 | 시공업자 변경에 따른 처벌

■ 질의내용 ■■■■

- 신고인이 "A"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하여 지하수신고를 한 후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B"업체에서 지하수개발을 한 경우 지하수법 제39조제1호(지하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의 규정에 따라 "B"라는 시공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 답변 ■■■■

-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인이 지하수개발 시공업체를 "A"업체에서 "B"업체로 변경하는 것은 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지하수법 제39조제1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지하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인이 아닌 개발업체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

관련 규정

【지하수법】

제8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지하수개발·이용신고) ① ~ ⑤ (생략)

⑥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신고인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2. 지하수개발·이용의 용도를 변경(음용수 사용여부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52 토지 매매에 따른 변경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대상

■ 질의내용 ■■■■

- "A"씨는 2008년 7월경 경매에 의한 낙찰로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A"씨는 이 곳에 공장설립을 검토 중 지하수가 미신고 상태인 점을 발견하고 해당관청에 신고한 경우 해당관청에서 과태료를 전소유자에게 부과를 해야 하는지, 현소유자에게 부과를 해야 하는지?

■ 답변 ■■■■

- 2008년 7월에 경매에 의한 낙찰로 소유권 이전된 토지에 존재하는 미신고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발견된 일시가 얼마 안 된 점에 비추어 본다면 현 소유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걸로 보여지며, 이전에 동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개발·이용하던 자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임.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II

유출지하수 / 굴착행위 / 사후관리

1 유출지하수 사용시 사용료 징수 여부

■ 질의내용 ■■■■

- 지하철 역사에 유출지하수가 발생되어 일부는 활용신고 후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고, 대부분은 인근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 인근 지역의 건물, 재개발 사업 등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를 활용할 경우 사용자가 모든 시설(펌프, 배관연결공사 등)을 한 후 공사측에서 지하수 사용량에 대한 비용을 요청해도 되는지?
- 기존의 펌프설비는 공사 것을 활용하고, 배관 중간에서 연결공사를 한 후 사용자가 활용시 공사측에서 일정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사용자에게 비용을 요청해도 되는지?

■ 답변 ■■■■

- 지하수는 국가의 공적자원으로서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지하수가 유출된 지하철 역사 공사에는 사용함이 가능하나, 이를 제3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이용은 불가함.

2 유출지하수 처리시 인허가

■ 질의내용 ■■■■

- 건설현장 공사 시행 시 지하 터파기를 시행하면서 지하에서 지하수가 유출되는데, 이런 유출수를 외부의 하수관로에 양수하여 유도 처리할 때 해당 구청에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 지하수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해 지하철, 터널 등의 지하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이로 인하여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지하수 유출 감소대책에도 불구하고 당해 시설 또는 건축물 등의 준공 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정한 이용용도에 맞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3 유출지하수에 대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여부

■ 질의내용 ■■■■

- 지하수법 제9조의2 에 해당하는 유출지하수에 대하여 지하수법 제30조의3 에 의거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는지 여부
- 지하수법 제9조의2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지하수법 제8조에 의거 신고로 접수받아 관리하던 유출지하수에 대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 지하수법 제30조의3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해당되며, 지하수법 제9조의2에서 규정하는 유출지하수는 지하수법 제17조에 의한 허가나 지하수법 제8조에 의한 신고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은 아님.
- 지하수법 제9조의2의 유출지하수 관련 규정은 건축물이나 터널 등의 설치로 인해 유출지하수가 발생할 경우 감소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우선이며, 감소대책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하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한편 지하수법 제9조의2 관련조항은 2001.1.16 신설되어 2001.11.17 시행되었으며, 동 조항이 시행되기 이전의 시설에 대하여는 부칙에 경과조치사항을 두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4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및 이용계획 수립

■ 질의내용 ■■■■

-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법 시행규칙 제9조2제1항에 의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되면 사용계획이 없을 시에도 무조건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이 없으며, 공사중 일시적으로 유출됐다가 다시 되메우기하고 유출되는 지하수가 없을 시에도 해당되는지?
- 지하수법 제9조2에 의거 유출감소 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되어있는데 공사 시작 전에 유출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먼저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인지 혹은 대책을 수립을 한다면 어떤 양식에 의해 어느 담당부서에 제출을 하여야 하는지?

■ 답변 ■■■■

- 다음 규모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될 경우에는 "지하철, 터널 등의 지하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광역시 이상의 도시에 건설하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수립, 관할 지자체의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의 대상 및 지하수의 유출량은 ①지하철 역사 1개소 1일 300톤 이상, ②터널, 전력구, 통신구 각 1개소 1일 300톤 이상, ③광역시 이상의 도시에 건설하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동 1일 30톤 이상임.
- 유출지하수 저감대책은 지하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유출지하수 사용 의사의 유무에 불문하고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할

수 있는 대책, 즉 유출지하수 저감대책"을 사전에 수립해 두었다가, 공사 진행 중에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동 대책을 시행하여야 하는 제도임. 현행 지하수법상에는 유출지하수 저감대책을 수립한 자가 관할 지자체 등에 제출하여야 하는 규정은 없습디만, 일부 지자체의 지하수 담당부서에서는 관할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공사 진행중에 발생할 지도 모를 지하수의 유출에 대한 담보로 동 대책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음.

관련 규정

【지하수법】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이로 인하여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당해 시설 또는 건축물 등의 준공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2(유출지하수의 용도)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생활용수 중 소방용·청소용·조경용 또는 공사용
2.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5 유출지하수의 적용 범위

■ 질의내용 ■■■■

- 당 현장은 전력구 공사로서 수직구 및 쉴드공법을 통한 지하 터널굴착공사 현장으로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무기성오니와 지하수가 합쳐져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최초의 지하수 예상 발생량은 1일 300톤이 초과 예상되나, 이를 전량 폐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고 대부분의 물은 리사이클링을 하며, 최종적으로 방류되는 양은 300톤 미만으로 이 경우 유출지하수라 함은 최초의 지하수 예상발생량(폐수처리 계획 예상량)인지 아니면 폐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최종방류량을 말하는지?

■ 답변 ■■■■

-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출지하수는 "건축물 등의 준공 후에 발생하는 지하수"를 말하는 것임.

6 굴착행위신고 주체와 과태료 부과 대상

■ 질의내용 ■■■■

- "A"라는 업체가(사기업) 생활용수로 허가대상인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하여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B"업체)만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였으나 "B"업체는 "C"라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게 위탁하여 굴착행위는 "B"업체에서 하고 "C"업체는 지하수영향조사업을 하도록 한 상태에서 동일번지에 굴착행위 신고를 득하지 않고(당초 신고한 것은 있지만 1개 공임) 동일번지에 다른 위치에 굴착을 하였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굴착행위를 한자("B"업체)인지 아니면 신고주체인 영향조사업체("C"업체)인지?

■ 답변 ■■■■

- 동 내용으로만 볼 경우 당초 신고한 이용 공에 대한 "굴착행위종료신고"와 다른 장소에 굴착한 공에 대해서는 "굴착행위신고"를 동시에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당초 신고한 이용 공에 대해서는 "굴착행위종료신고서"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400만원의 과태료를, 다른 장소에 굴착한 것에 대해서는 굴착행위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당해 관청으로 문의하기 바람.
- 굴착행위의 신고주체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됨.

7 굴착행위 신고후 지하수 개발시 처벌

■ 질의내용 ■■■■

- 관내 어느 업체에서 3년 전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를 하고 굴착행위신고증을 교부받았으나 이 후 3년간 여러 차례의 부도 등으로 지하수에 관련된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굴착행위신고만 수리) 찜질방과 목욕탕의 건축물 및 기반설비(지하수는 유량계 등 계량장비만 미설치)를 갖춰 놓은 상태로서 지하수굴착신고 수리 이후에는 아무런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지하수관련 시설을 거의 완공한 상태이며, 이 상태에서 지하수관련 허가, 준공을 맡으려고 준비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지하수법 제37조제1항에 해당되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을 적용 가능한지 여부
- 기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굴착행위신고 수리 받은 업체)와 나중에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지하수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업체)가 다른데, 여기서는 나중에 시공업체가 행정처분을 받는지와 해당 목욕탕과 찜질방 업체대표와 시공업체 모두 행정처분을 받는 지하수법 제38조(양벌규정)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볼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한 자는 지하수법 제37조 1호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하수법 제37조 10호 규정에 의하면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발·이용자뿐만

아니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도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현장상황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기 바람(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는 2005.5.31이 후 시공한 업체에 해당됨).

관련 규정

【지하수법】

제3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2. ~ 9. (생략)
10.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8 | 굴착행위의 취소 여부

■ 질의내용 ■■■■

-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한 굴착행위신고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서 토지주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함에 따라 신고수리 하였으나 토지주가 신고수리 후 토지사용승낙 해주었던 것을 취소하고 굴착행위신고 취소를 요청할 경우 기 신고 된 굴착행위는 취소가 가능한지? 아니면 굴착행위신고는 영향조사업체의 명의로 신고수리 되었기에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보완사항에 해당 되는지?

■ 답변 ■■■■

-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을 득한 후에 신고 수리된 토지굴착행위신고는 유효한 행정행위로 인정된 바, 동 토지굴착행위신고의 취소는 기존에 굴착행위신고를 한 영향조사기관이 그 취소도 요청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굴착행위 취소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9 굴착행위의 신고주체, 신고내용 등

■ 질의내용 ■■■■

- 건축물 공사를 하기위한 사전 지질조사를 위해 굴착시에 사업시행 본사와 그 지질조사를 위탁받은 시공사가 있을 경우, 어느 쪽이 신고주체가 되며, 또한 굴착행위 미신고시 행정처분은 대상은 누구인지?
- 굴착행위 신고에 있어 굴착깊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는지?

■ 답변 ■■■■

- 지하수법 제9조의4 규정에 따르는 지질조사의 굴착행위 신고주체는 사업시행자이며,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하는 경우 법 제39조제4호의2에 의한 행정처분은 신고인에게 하여야 함.
- 지하수법 제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규정에 의거 굴착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지하수 조사는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이므로 굴착깊이에 상관없이 신고하여야 함.

(유사질의)

- 지하수법 제9조의4에 의거 철도설계를 위한 지반조사를 위하여 굴착행위 신고시 신고자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인 자가 신청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

- 굴착행위신고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됨. 따라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굴착행위신고와 관련한 특별한 자격은 없음.

10 | 굴착행위 신고 유효기간 및 종료시점

■ 질의내용 ■■■■

- 2007년 4월, 9월에 각각 토지굴착행위 신고후(조사공, 영향조사 등) 2007년 12월 굴착행위를 완료 하였으나, 현재까지 굴착행위종료신고를 하지 않고 있으며, 1공은 지하수 개발·이용을 위한 시설(수중모터, 전기배관 등) 설치가 완료 되었으나 사용은 하지 않고, 다른 1공은 수중모터펌프와 전기 배관 등을 설치하면 지하수를 사용 가능한 상황에서 지하수 조사 및 영향 조사를 완료한 시점을 굴착행위 종료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위 사항을 완료한 후 언제까지 종료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지하수법에는 기한이 없음)? 만약 지하수 굴착행위 종료신고를 미이행 하였을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지?
- 굴착행위 신고를 하고 위와 같은 상황이며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 개발(수중모터, 전기 배관 등)만 하고 미사용 했을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는지? 처벌대상이 된다면 누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만약 지하수 영향조사 진행중이라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지?
- 굴착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지하수개발은 어디서부터 해당되는지?

■ 답변 ■■■■

-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굴착행위종료신고"의 시점은 그 행위를 종료한 시점, 즉, 지하수조사 또는 영향조사를 완료한 시점이 해당된다 하겠음.
- 현행 지하수법에는 언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지가 없습디만, 동 건과 같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목적이라면 굴착행위종료신고가 되지 않으면 그 이후의 절차, 즉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신청이 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그 허가 신청전에는 종료신고 및 신고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러, 종료신고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39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 지하수를 허가받지 않고 개발하였을 경우, 그 사용여부에 불구하고 지하수법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하수를 개발·이용한 자에게 처할 수 있음. 또한, 동 지하수시설물을 허가받지 않고 개발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도 지하수법 제37조제10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지하수개발·이용시설물 등이 설치된 상황에서 지하수 영향조사 운운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굴착행위의 범위는 당초에 신고한 사항까지 해당되겠고, 지하수개발은 굴착행위 종료 후 지하수개발·이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순간부터 지하수개발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관련 규정

【지하수법】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해당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조사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
3.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
4.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 ~ ④ (생략)

11 | 굴착행위 신고대상 여부

■ 질의내용 ■■■■

-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굴착행위 신고 대상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조사,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 대통령이 정하는 행위로서 - 「광업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탐광 - 굴착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지하수조사 - 지중열을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열 냉난방공사(지하수를 뽑아쓰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되어 있으나 굴착의 목적이 위의 사항이 아닌 계측기 설치목적(지질·탐광·지하수조사, 지하수 영향조사, 수질측정 목적이 아닌 경우)으로 굴착하는 경우 지하수법에 의한 굴착신고 대상인지 여부

■ 답변 ■■■■

- 현행 지하수법상으로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굴착신고 대상이 아님.

12 | 굴착행위 취소 사유

■ 질의내용 ■■■■

- 지하수 개발(지하수영향조사)을 목적으로 굴착행위신고를 한 후 계속하여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지열 냉난방용(지하수를 뽑아 쓰는 경우) 굴착공의 경우 영향조사를 위한 굴착행위신고를 한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 ■■■■

- 지하수영향조사를 위한 굴착행위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을 하기 전의 단계로서 지하수법 제7조의 규정의 의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취소요건인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과는 별개임. 아울러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의 허가취소는 굴착행위와는 관련없는 규정임.

관련 규정

【지하수법】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시장·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착공후 계속하여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13 | 굴착행위 미신고시 벌칙

■ 질의내용 ■■■■

- 굴착행위를 하지 않고 굴착을 한 경우 굴착한 관정 공수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종료신고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를 한 경우 굴착행위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것도 공수에 따라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 지하수 오염은 관정 개개별로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두 다 원상복구하여야 함. 여러 개의 관정도 하나만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관정의 원상복구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합당함.
- 굴착행위종료 이행신고는 당초에 굴착행위신고시의 적법하게 신고한 수량에 대해 일괄적으로 신고를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동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굴착행위신고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이미 부과하게 되므로 굴착행위종료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부과 의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14 굴착행위 신고대상 여부

■ 질의내용 ■■■■

- 개인토지에 동의를 얻어 매장물 발굴을 위해 지름 150 mm, 깊이 30 m 정도 굴착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에 해당되어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 답변 ■■■■

- 동 건과 같은 규모의 굴착이라면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현행 지하수법에는 매장물 발굴을 위한 굴착이 지하수법에 의한 굴착행위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다만, 문화재 등 매장물 발굴을 위한 굴착은 「문화재관리법」 등 관련법에 의해 신고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며, 아울러 향후 지하수법 개정시에는 이런 경우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지하수법에 규정함을 검토할 계획임.

15 | 굴착행위 종료신고 시점

■ 질의내용 ■■■■

- 지열 냉난방시 굴착행위 신고를 하는데 종료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원상 복구처리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또 원상복구 예외신청을 받아야 하는지?

■ 답변 ■■■■

- 종료시점은 지열 냉난방용 공사가 완료된 시점이 될 것이며, 원상복구는 지열 냉난방의 이용이 종료되었을 경우에 이행하여야 할 것임.

(유사질의)

- 지열 냉난방시설(우물형관정 SCW방식) 공사로 인해 굴착행위 신고에 있어 시설의 준공시점이 종료 시점인지? 아니면 시설이 완전히 없어지는 시점이 종료 시점인지? 신고를 받고 종료신고를 받는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만약 시설의 준공시점이 굴착행위 종료신고의 시점이 된다면 굴착행위 종료 후 지하수개발·이용신고 및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신청대상이 되는지?

(답변)

- 굴착행위 종료시점은 굴착행위 자체가 끝나는 시점으로서 지열 냉난방공사를 위한 굴착이 끝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단계를 의미함. 따라서 굴착행위 종료신고를 할 때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고 지열 냉난방공사를 위한 시설임을 명기하여 제출하면 됨.

16 굴착행위 신고시 첨부서류

■ 질의내용 ■■■■

- 지하수 신고 및 굴착행위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 산지전용신고증 또는 농지전용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소유자 확인을 위한 토지등기부등본만 첨부하면 되는지 여부

■ 답변 ■■■■

- 농지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은 「농지법」과 같은 개별법에 의한 허가 등 제절차가 먼저 이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그러나,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신고시나 굴착행위신고시에 첨부서류로서 산지 또는 농지전용신고증 등을 첨부하도록 지하수법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즉, 농지전용허가 등은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이전에 행하여야 할 행정절차이지 지하수개발·이용신고시 등에 갖추어야 할 서류로서 필요한 것은 아님. 따라서, 토지매매계약서나 토지사용승낙서, 토지등기부등본과 같은 서류만 있으면 됨.

17 | 굴착행위 신고시 「온천법」 적용 여부

■ 질의내용 ■■■■

- 지하수개발을 목적으로 심도 1,000 m로 굴착행위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관할 관청에서는 굴착심도가 깊다고 하여 「온천법」에 의거하여 신고할 것을 요청한 바, 당초 지하수개발을 목적으로 굴착하는데 굴착심도가 문제가 되어 신고가 반려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니면 굴착심도에 따라 반드시 「온천법」 적용이나 지하수법 적용이 달라지는지 여부

■ 답변 ■■■■

- 현행 지하수법상에서는 굴착심도에 관한 제한규정이 없음. 다만,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굴착심도를 1,000m까지 하는 것의 경제성 및 향후 온천으로 변경하던 유사사례 또는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처음부터 온천으로 개발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현지사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온천 및 지하수와 관련한 관계관청과의 협의를 통해 처리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유사질의)

- 온천공 보호지역에는 가정생활용수인 경우만 지하수개발 굴착이 가능하다는데, 현재는 다른 주소이지만 새로 구입한 대지에 건축계획이 있는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가정생활용수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만약 가정용이라는 사실을 해명 하지 못하면 지하수개발 신고를 하지 못하는지?

(답변)

- 생활용-가정용은 통상 준공검사시 배관 등을 보고 인허가 담당자가 판단하는 것이며 향후 설치될 건축물에 사용될 경우라면 배관설계도나 사후증명 등을 조건으로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당해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온천공보호구역에서는 지하수개발용도가 가정용 등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온천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전안전부로 문의하기 바람.

18 사후관리공사 시행 업체

■ 질의내용 ■■■■

- 지하수시설 사후관리 시공업체 선정에 있어 일반 지하수 개발업자도 가능한지 아니면 일정한 등록기준에 의한 등록업을 필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지? 또한 사후 관리공사시 내역서와 시방서를 작성할 때 법적 예규나 지침이 있어 그 기준에 의해 작성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 지하수법 제9조의5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등록한 업체만 가능하며 내역서와 시방서는 상황에 맞게 적절히 작성해야 함.

19 사후관리 대상 여부

■ 질의내용 ■■■■

- 다중이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중 지하수를 실제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를 하는데 이용하지 않고, 부수적인 용도인 화장실용, 청소용으로만 사용
하는 경우나, 백화점같은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하여 지하수를 화장실용,
청소용으로만 이용하고 있다면, 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지하수법 시행
규칙 제9조의6 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후관리 주기를 2년으로 해야 하는
지, 아니면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보
아 사후관리주기를 5년으로 구분을 해야 하는지?

■ 답변 ■■■■

- 현행 지하수법은 사후관리 주기에 대해 규정하면서 다중이용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등은 실제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영업행위에 실제 사용 하지 아니하는 지하수의 시설물의 사
후관리주기는 5년으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 규정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 ③ (생략)

④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 시설의 규모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주기는 매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기는 매 5년으로 한다.

1.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시설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급수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시설
3.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 중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다중이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4.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중 제2호에 해당되는 시설, 제3호에 해당되는 시설 및 지열냉난방시설을 제외한 시설

20 사후관리 이행 주기

■ 질의내용 ■■■■

- 현재 골프장에서 10공의 지하수를 개발하여 허가를 득하여 사용중으로, 이 경우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고 다중이용 지하수시설이므로 전체 10공의 사후관리 시행 주기가 매 2년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공별로 양수능력을 검토하여 100톤 초과시설은 매 2년으로 하고 100톤 초과시설이 아니면 매 5년으로 해야 하는지?
- 10공의 지하수중 2공만 생활용수(음용)로 사용하고 나머지 8공은 잔디용수(농업) 및 청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용도에 상관없이 10공 전체를 매 2년마다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생활용수(음용)로 사용하는 2공만 매 2년으로 하고 나머지 8공은 매 5년으로 해야 하는지?

■ 답변 ■■■■

- 골프장내 지하수시설은 동일사업장으로 보아 10공을 묶어서 양수능력을 판단하여 허가시설로 관리하여야 하며 개별 관정 또한 허가시설로 관리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사후관리는 동시설이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해당된다면 사후관리 주기는 2년으로 하여야 할 것임.

(유사질의)

- 저희 골프장(다중이용시설로 봄)에서 먹는물용 관정(심정)과 관개용수용 관정(조경용-집수정)이 있으며, 먹는물은 일일 사용량이나 용도로 보아 사후관리 대상이나, 관개용수용 집수정(직경1.5 m의 흠관(그라우팅)이 24 m 깊이로 되어있는 시설임)도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은 먼저 골프장이 「체육시설의운영및설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해당되는지를 관할하는 담당부서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만약 귀하의 사업장이 「체육시설의운영및설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에 해당되며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시설이라면 사후관리 주기는 5년에 해당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만약 귀하의 사업장이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해당되며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고 귀하가 문의하신 관정이 골프장 영업을 위한 시설일 경우에는 사후관리 주기는 2년에 해당이 될 것임.

관련 규정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1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서 구비서류

■ 질의내용 ■■■■

- 지하수 사후관리이행종료신고서의 구비서류 중 "사후관리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공무원 확인서가 가능하다면 확인서의 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는지?

■ 답변 ■■■■

- 지하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지하수조사전문기관,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지하수협회에 의한 확인서(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고 이행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음)도 가능하며 "지하수업무수행지침(2006, 건설교통부)" p2-96을 참고하기 바람.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Ⅲ

이행보증금 / 원상복구

1 이행보증금 산정 방법

■ 질의내용 ■■■■

- 택지개발지구 내 지반조사를 위해 토지를 굴착할 경우 굴착심도 10 m, 굴착지름 75 mm로 43개공을 굴착할 때 이행보증금은 얼마인지? 또한 이행보증금은 공별로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 답변 ■■■■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 2006-537호)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행보증금은 각 공별로 산정해야 함.

2 원상복구비 산정 기준

■ 질의내용 ■■■■

- 택지조성공사현장에 공사중 폐공의 원상복구 대상공이 케이싱을 절단하는 것으로 설계 되어 있어 이를 전체 인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지하수 원상 복구 금액 산정 기준은?

■ 답변 ■■■■

- 이행보증금의 산정 기준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 12월 15일자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37호에 의거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동 산정기준은 우리부가 발행한 "지하수업무수행지침 (2006, 건설교통부)" 2-54쪽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3 변경허가시 이행보증금 예치 기간

■ 질의내용 ■■■■

- 기존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서에 허가유효기간이 2003.4.24 ~ 2008.4.23 까지 되어 있는데 지하수 심도를 기존 굴착 깊이에 비해 500 m (2007.8~9)를 추가 굴착한 경우 이행보증금을 현재 발급된 허가증의 허가유효기간인 2008.4.23 까지 하고 허가유효기간이 끝나갈 시점에 다시 허가연장신청을 해서 이행보증금을 작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5년간 이행보증금을 작성하여 새로운 지하수개발·이용허가서를 받을 수는 없는지?

■ 답변 ■■■■

- 이행보증금의 입법취지상 500 m를 추가 굴착한 상황까지 이행보증이 되어야 하므로 변경이후의 상황에 대해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4 (이행보증금) 예치

■ 질의내용 ■■■■

- 2002년에 지하수 개발신고를 하면서 이행보증금(5년)을 예치해야 한다고 해서 현금 800,000원을 시청에 예치한 후 예치기간 5년이 만료된 상태에서 현금으로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반납 받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연장을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 답변 ■■■■

-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비용으로 그 예치기간은 원칙적으로 공사의 착공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중간에 지하수 개발·이용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만료된 날로부터 1년간 예치하도록 되어 있음. 5년이 지나도 지하수 개발·이용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5년간씩 연장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은 연장 당시의 기준금액으로 예치하여야 함. 아울러,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으로는 현금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증서 및 유가증권 등으로도 예치가 가능함.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후 이행보증금의 반환은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증서, 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 유가증권 등으로 반환받을 수 있음.

5 원상복구 의무자

■ 질의내용 ■■■■

-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2개 공의 지하수를 개발하여 2개의 회사가 인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던 중 1개의 회사는 부도가 난 상태이며, 1개의 회사는 사업을 포기했으며 연락이 두절된 상태임. 또한 지하수 개발위치는 사업부지가 아닌 개인소유의 땅(답)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득하여 허가된 상태로서 허가유효기간은 2010년 8월까지이며 이행보증서 기간은 지난 상태임.
- 이 경우 지하수 원상복구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며, 연락이 두절된 상태의 회사 지하수를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는지?
- 지하수 개발위치에 있는 농업인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데 농업인에게 지하수를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답변 ■■■■

- 지하수법 제15조제1항은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자"가 해당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질의의 경우 지하수의 원상복구의무자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한 자"가 된다 할 것임. 아울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의 회사 지하수를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현행 지하수법에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질의상 회사가 이용하고 있던 지하수를 법적인 권리승계 절차없이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음.

6 토지 소유권 이전 후 원상복구 의무자

■ 질의내용 ■■■■

- "A"가 지하수이용시설을 신고·허가 등을 하지 아니하고(불법시설) 경작용으로 사용하여오다가 토지를 "B"에게 소유권을 넘긴 후 "B"는 현재 그 지하수이용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방치하여 방치공이 된 경우 지하수이용시설 방치공의 원상복구의무자가 "A"인지, "B"인지 여부
-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불법 지하수이용시설에 대한 과태료처분 대상은 누구인지? 덧붙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도 양벌규정의 적용가능 여부

■ 답변 ■■■■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 의무자는 지하수법 제15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에 대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며, 당해 시설의 소유권 이전 등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인 명의가 변경되어 권리·의무가 승계된 경우는 승계 받은 자에게 원상복구의무가 있음. 따라서 토지 매수인과 매도인간에 명의변경에 의한 지하수시설의 권리·의무가 승계되지 않았고 토지 매수인이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원상복구 의무자는 지하수 개발·이용에 대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 불법지하수이용시설의 과태료 처분대상은 지하수개발·이용자이며, 불법 지하수개발업체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 적용대상임.

(유사질의1)

- 세입자가 1994년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였고 건물주와 소송으로 2005년 건물주에게 쫓겨난 상태에서 건물 소유자가 건물주로 바뀌었는데 지하수변경(신고인변경)신고는 하지 않았음. 지하수관정은 건물을 포함한 소유로 보아야 할지 원상복구 의무자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답변)

- 질의하신 바에 의하면 건물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1994년도에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이용 중이었으나 소송관련으로 2005년경부터 건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자 변경신고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원상복구의무자는 전 세입자 된다고 할 수 있음.

(유사질의2)

- 지하수 이용시설 소유자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관으로부터 시설물 보상을 받고 토지(도로로 편입될 예정임)의 소유권 이전이 된 경우 지하수에 대한 원상복구의 의무자는 누구인지?

(답변)

- 공공사업에 편입된 지역의 지장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이전되어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사업 추진에 저해되는 지하수시설물 등 지장물의 이전비로 보상되는 것으로써 보상을 받은 자가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관련 규정

【지하수법】

제15조(원상복구 등)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 동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에 의한 개발·이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지하수개발·이용신고)

① ~ ⑤ (생략)

⑥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신고인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7 토지 소유권 이전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자

■ 질의내용 ■■■■

- 지하수 폐공에 관하여 전 토지소유자가 지하수개발을 했는데 지금 현재 토지를 매입한 자는 지하수가 있는지 몰랐다가하여 원상복구를 하긴 해야 하는데 자비로 못한다고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지하수법에 토지소유자가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 답변 ■■■■

- 현행 지하수법에는 토지소유자가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원상복구의 의무를 누가 지는지에 대해서는 권리관계에 따른 지하수법의 법해석에 따라 원상복구 의무자가 달리 될 수 있음. 지하수법 제15조제1항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에는 지하수시설물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함. 따라서, 원상복구 의무자 판별시 초점은 "마지막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적법이던, 불법이던 간에 최종적인 지하수개발·이용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현 토지소유자가 지하수개발 시설물을 계속 이용하고 있는지 또는 계속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경우임.
- 관할 지자체 지하수 담당부서에 신고되어 "마지막 지하수개발·이용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현 토지소유자는 사용할 의사도, 사용치도 아니할 경우에는 "마지막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원상복구의 의무를 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만 이 경우에도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 경우는 지하수시설물이 적법이던, 불법이던 불문임(지하수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
- 둘째, "현 토지소유자가 지하수개발 시설물을 계속 이용하고 있고 또한 계

속 이용할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현 토지소유자가 원상복구의 의무를 진다 하겠음.

- 셋째, 원상복구의무자가 불문명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또는 토지의 굴착시설 등이 방치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원상복구의무를 지는 것으로 판단됨.(지하수법 제15조제4항제2호). 이 규정 때문에 지자체의 지하수 담당부서 공무원은 불법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파악, 적법화 또는 원상복구 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8 공공사업에 편입된 시설의 원상복구 의무자

■ 질의내용 ■■■■

- 공공사업(도로건설)에 편입 철거되는 주택 및 농지 소유자 개인이 이용하던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지장물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고 지하수법에 의한 원상복구 절차 이행하지 않고 이사간 경우 지하수법에 의한 폐공처리 원상복구 주체 및 절차와 방법은?
- 발주처로부터 보상금 수령한 각 개인이 지하수법에 의한 폐공절차(비용포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공사업 시행을 위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발주처에서 하여야 하는지?
- 만일 지하수법에 의한 폐공처리 주체가 발주처가 아닌 당초 지하수 개발·이용자일 경우 원상복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이사간 경우에 발주처 예산으로 처리하고 지하수법에 의거 예치된 "이행보증금 청구" 가능 여부
- 발주처에서 폐공처리 원상복구공사 설계시 "구"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2-9(2002.01.04) 에 의한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기초자료(당시의 품셈기준)를 근거로 단가산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 원칙적으로는 지장물 보상금을 수령한 자가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자"이므로 원상복구 주체가 됨.
- 원상복구의무자를 대신하여 원상복구를 대신할 수 있는 자는 시장·군수이며 이 경우에 이행보증금 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음. 발주처가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원상복구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발주처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이행보증금 산정기준에 의해 원상복구비 산정은 가능함.

9 타 공사 시행에 따른 원상복구 예외 규정

■ 질의내용 ■■■■

□ 지하수법 제15조제1항 단서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3호에 “지형여건상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원상복구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바, 도심지역 대규모 재개발 지역내 지하수 신고 관정에 대해서 이용종료 및 원상복구이행 관련하여 원상복구 대상관정의 굴착 깊이보다 재개발 계획도상 건물공사를 위한 굴착 깊이가 더 깊다면 해당사유서 제출에 의거 원상복구예외가 가능한지 여부[예를 들어 굴착깊이가 20 m인 지하수신고관정이 있는 위치에 재개발 계획도를 확인하였을 때 지하7층의 건물공사를 위한 굴착(약 30 m 이상 굴착)이 이루어진다면 원상복구예외로 인정이 가능한지]

■ 답변 ■■■■

□ 재개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관정이 위치한 지점에 30 m 이상 깊이의 굴착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원상복구 예외로 인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단순히 계획도만 보고 원상복구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에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즉, 어떠한 수준까지의 계획이 이행의 담보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관련 규정

【지하수법】

제23조(원상복구의 예외 등) ①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지하수의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3. 지형여건상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10 먹는샘물 관측정의 원상복구 예외 규정

■ 질의내용 ■■■■

- 먹는샘물의 개발을 위해 취수정과 관측정에 대해 지하수법에 따라 굴착허가신청을 하여 굴착공사를 완료하고 굴착행위 종료신고를 한 경우 「먹는물관리법」에는 관측정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지하수법에 따른 굴착행위종료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폐공은 할 수 없으니 지하수법에 따른 원상복구 예외인정신청(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을 하여야 하는지? 원상복구 예외신청을 한다면 어떤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 답변 ■■■■

- 굴착행위신고를 하고 필요한 굴착이 끝나면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굴착행위 종료신고를 하면 됨. 굴착행위종료신고란 굴착행위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굴착행위 종료신고를 할 경우 당해 굴착행위신고증, 원상복구계획서와 함께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해 계속해서 이용하는 경우이므로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샘물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됨.

관련 규정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원상복구의 예외 등) ①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지하수의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3. 지형여건상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11 케이싱 인발시 원상복구 처리방법

■ 질의내용 ■■■■

- 불용공에 대하여 원상복구 작업을 할 때 인발이 가능할 경우엔 지표부 터파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서는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되어 있어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이용 계획에 있어 터파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됨. 이와 같이 터파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인발시)에도 지표부 표면처리 즉, 시멘트 몰탈 타설(콘크리트 30cm 두께로 타설)을 꼭 해야 하는지 여부
- 만일 터파기를 했을 경우 타설이 필요하지만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개발로 인하여 주변이 다시 성토되거나 절토된다면 터파기 한 후의 콘크리트 타설은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지침대로 타설을 반드시 행해야 되는지 여부

■ 답변 ■■■■

- 현행 지침서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타설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침하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타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치바람.

12 |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의 원상복구 처리방법

■ 질의내용 ■■■■

- 본 현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으로 2003년 환경영향평가서상에는 폐공을 공매재료(시멘트+벤토나이트+물)로 충전하게 되어 있는데 지하수법 시행령 제24조에는 "굴착공 내부를 확인하여 설치자재 및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당초에 굴착한 바닥부터 지표까지 시멘트슬러리·점토 등 물이 침투하기 어려운 재료로 되메움할 것. 다만, 지표하부보호벽의 하부에는 모래 등 물이 침투하기 쉬운 재료를 주입하여 되메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현재 시점에서 원상복구 할 경우 지하수법에 의하여 지표하부 보호벽 하부에는 모래를 주입하여 되메움하고, 지표하부 보호벽 상부에는 환경영향평가서상에 기재된 공매재료로 충전을 할 경우 이게 적법한 사항인지 여부

■ 답변 ■■■■

- 불용공의 원상복구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의해 굴착한 바닥부터 지표하부보호벽(케이싱파이프)의 하부구간(미고결암층 하단으로부터 약 3m 깊이 아래 암반층)까지 투수성재료(모래 등 물이 침투하기 쉬운 재료)를 주입하고, 그 상부부터 지표까지는 불투수성재료(물+시멘트 그리고 벤토나이트)를 주입하는 것으로 제시하신 방법은 현 지하수법에 준하는 적법한 방법임(다만, 투수성재료 주입구간만 유의하면 됨).

관련 규정

【지하수법 시행령】

제24조(원상복구의 기준·방법·기간 등)

① ~ ③ (생략)

④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서는 원상복구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하여 원상복구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굴착공 내부를 확인하여 설치자재 및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당초에 굴착한 바닥부터 지표까지 시멘트슬러리·점토 등 물이 침투하기 어려운 재료로 되메움할 것. 다만, 지표하부보호벽(이하 이 항에서 “보호벽”이라 한다)의 하부에는 모래 등 물이 침투하기 쉬운 재료를 주입하여 되메움할 수 있다.
2.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을 제거할 것. 다만, 보호벽을 제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변의 토양을 터파기한 후 지표로부터 깊이 1미터 이상 보호벽을 절단할 것

13 경미시설의 원상복구

■ 질의내용 ■■■■

- 지하수법 제2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미시설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가 아니어도 원상복구가 가능한데, 이러한 조항으로 개인이 원상복구를 한다면 시공업체가 아닌 개인이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 원상복구 완료시 현장작업일지, 처리모식도, 과정별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 현행 지하수법상의 취지로는 개인이 경미한 지하수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신고할 경우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지하수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 참조) 원상복구 완료시 현장작업일지, 처리모식도, 과정별 사진을 제출하여야 함

관련 규정

【지하수법 시행령】

제34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의 예외)

- ① (생략)
- ②법 제22조제3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이고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공사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중 상부보호공의 보수공사(적산유량계 및 출수장치의 교체·수리를 포함한다)
 3.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

14 하천에서의 원상복구 방법

■ 질의내용 ■■■■

- 지질조사를 목적으로 굴착지름 76밀리미터로 굴착하기 위한 굴착행위신고서를 ○○군청에 제출하려 하는데 하천(수상)에서의 굴착시 원상복구방법은?

■ 답변 ■■■■

- 이 경우의 원상복구방법으로는 「지하수업무수행지침(2006, 건설교통부)」 6-36쪽의 "충적층 우물의 되메움" 방법의 예를 따르면 될 것임

15 원상복구시 내부 오염물질 제거

■ 질의내용 ■■■■

- 심도 220 m 지하수시설에 수원부족으로 수량 확보를 위해 토출관 연결작업중 스테인레스 재질의 토출관과 수중모터펌프가 관정바닥으로 떨어져 사실상 인양이 불가능한 경우 지하수법에는 "굴착공 내부를 확인하여 설치자재 및 오염물질을 제거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내의 토출관과 수중모터펌프의 인양 불가한 상태에서 원상복구 방법은?

■ 답변 ■■■■

- 본 질의의 경우 "지하수업무수행지침(2006, 건설교통부)" 제6장 지하수 불용공(방치공) 관리에 의한 원상복구의 일반절차 중 암반층 대형우물(전구간 되메움 순서(유형6))의해 실시하는 절차로 보여지며, 따라서 현재 지표하 120 m에 추락된 양수설비(수중모터펌프 등)는 인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지하수시공업체에서 2~3차례의 인양 시도에도 불구하고 양수설비(수중모터펌프 등) 인양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양수설비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부식 및 지하수 오염우려는 없다고 판단하여 케이싱 하부 구간까지 투수성재료(모래, 자갈)를 주입하여 정상적인 원상복구 절차에 의해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16 원상복구 비용 부담

■ 질의내용 ■■■■

-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계약의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구간 내의 지하수이용시설(농업용 소형관정 등)에 대하여 지하수 이용 종료에 따른 폐공 등의 조치를 할 경우, ①현재 용지보상 업무 중 "용지보상 열람 및 이의 신청기간"이 완료되었으며 보상금 산정 및 지급이나 소유권의 이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음 ②편입용지에 대한 용지 및 지장물 현황조서는 설계도서 납품시 제출하였으며 설계예산서에는 지하수이용시설의 폐공에 대한 금액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사구간 내의 지하수이용시설(농업용 소형관정 등)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은 누구 부담하여야 하는지?

■ 답변 ■■■■

- 공사구간에 편입된 지하수관정의 원상복구 책임은 공사를 시행하는 관청 등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은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지하수관정 등과 같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은 이전비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전비 보상이 곤란할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 단서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공사시행청에서 이전비보상을 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던 자가 원상복구를 하던, 공사시행청에서 직접 원상복구를 하던 하면 될 것임
- 지하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자가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나, 귀 질의사항과 같이 공익사업 등으로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관청 등에서 원상복구 이행 또는 원상복구 비용 부담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17 원상복구 후 지하수 개발

■ 질의내용 ■■■■

- 2003년 10월 임원 개인 명의로 지하수개발 허가를 받은 관정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개인이(현재는 전혀 관계가 없음) 기존 지하수에 대해 관할 시청에 통보를 하고 폐공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바, 당사가 다른 필지에 같은 용도로 새로운 지하수를 즉시 개발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폐공공사가 완료되고 신고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지하수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 기존 시설의 원상복구와는 별개로 새로운 지하수의 개발·이용 허가신청 또는 신고가 가능함.

18 방치공 발견시 소유주 불분명의 판단 근거

■ 질의내용 ■■■■

- "방치공찾기운동"과 관련하여 주민신고가 접수되어 현장 확인한 결과 농로 중간부분 2개소와 개인농지 경계지점 3개소가 확인되어 토지소유자 및 인근 토지소유자에게 지하수 사용유무 및 소유유무를 확인하였지만 누구도 토지위에 지하수를 자기소유의 지하수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경우 소유주 불분명한 지하수의 판단 근거 및 방법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한 시에 원상복구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 소유주가 불분명한 지하수의 판단근거는 토지소유주에 확인, 주변탐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지하수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해 "시장·군수는 원상복구의무자가 불분명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또는 토지의 굴착시설 등이 방치된 경우 원상복구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해당 시설 및 토지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람.

19 원상복구 신고시설 효력상실시 원상복구

■ 질의내용 ■■■■

- 지하수 허가시설은 허가취소 규정이 있는데 신고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이 없는 바 이 규정을 신고시설에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일 없다면 공무원이 직접 현지출장하여 지하수시설이 없는 것을 확인 후 폐공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 신고시설의 경우 지하수법 제10조 허가취소 규정을 준용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 신고는 법 제8조의2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또한 현장확인후 지하수시설이 없는 것에 대한 폐공처리 여부는 지하수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사진 등을 첨부하여 출장복명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 규정

【지하수법】

제8조의2(신고의 효력 상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신고인에게 신고의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신고한 자가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의사가 없음을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거나 시장·군수가 이를 확인한 경우
2. 신고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착공 후 계속하여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20 시추조사공의 원상복구

■ 질의내용 ■■■■

- 지질조사 수행 중 풍화대층(풍화토 및 풍화암)까지 굴착하고 시추 종료를 할 경우(Φ75mm NX Size) 원상복구를 "충적층 소형 우물(유형1)"의 되메움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 답변 ■■■■

- 우물은 심도에 따라 암반층 상부에 위치한 모래, 자갈, 실트 등 충적층 구간까지 또는 풍화대 구간까지만 굴착한 "충적층 우물"과, 충적층 및 암반층 심부까지 굴착하여 암반대수층의 지하수를 주 대상으로 개발한 "암반층 우물"로 대분되며, 이 우물은 또한 우물 구경에 따라 소형, 대형, 재래식 우물 등으로 분류되며 '구경별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소형 : 구경이 100mm(4") 이하인 공(시추조사공 포함) - 대형 : 구경이 100mm(4")를 초과하는 공 * 구경 1000mm 내외의 우물로서 석축우물, 콘크리트관 우물 등은 재래식 우물로 분류함.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은 75 mm 구경의 우물로서 소형 우물에 해당되어 유형1의 '충적층 소형 우물'의 되메움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21 원상복구의무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원상복구 주체

■ 질의내용 ■■■■

- 단독주택을 구매해서 7년째 살고 있는데, 누가 뚫었는지 확인이 안되는 우물이 있으며, 이제까지 저희는 우물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이걸 신고해야 한다는 것도 들은 바가 없는데, 시에서는 수질검사도 해야 하고, 신고도 해야 한다고 하는 바, 이런 경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행위 때문에 뒷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답변 ■■■■

- 고객님의 질의하신 바에 의하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한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고객님의께서는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지하수시설이 현재 방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하수법 제1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의무자가 불분명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또는 토지의 굴착시설 등이 방치된 경우"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동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원상복구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해당 시설 및 토지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할 것임.
- 과태료와 관련하여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인 귀하가 지하수 무단사용자가 아니라면 책임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지하수법 제41조). 그러나 만약 귀하께서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이용하셨다면 지하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됨.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IV

지하수 수질

1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시 수질검사 관련

I 질의내용

-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서류 제출시 생활용수 30톤 이하, 농업용수 100톤 이하는 수질검사가 면제가 되는지 여부

I 답변

- 지하수법 제9조 에 의해 준공신고 시에는 수질검사 면제대상 시설이라도 용도별 수질검사 성적서를 첨부해야 함.

관련 규정

【지하수법】

제9조(준공신고)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준공신고)

① (생략)

②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시설도
2. 수질검사서. 다만, 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월 안에 실시한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현장사진

2 특정용도 지하수의 수질검사 기준

■ 질의내용 ■■■■

- 공업용으로 지하수를 사용 중 사후관리 시행 이후 수질 검사 결과 염소이온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공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폐공대상 여부
- 동 시설은 갈수기를 대비한 예비용으로 사용은 거의 않고 있는 상황이며 공정상 공업용수를 공급받아 이온교환수지를 거쳐 연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염소이온이 기준치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수처리 공정에서 처리되며 폐수처리시설을 거쳐 배출되기 때문에 공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갈수기를 대비하여 응급조치를 위한 예비용으로 사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 지하수 용도별 수질 기준에 보면 "어업용수 및 지하수의 이용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염소이온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답변 ■■■■

- 지하수의 원수가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도 정수처리의 적정성 및 안정성 등에 대한 근거자료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인정을 받고 수질기준이 사용목적에 적합하다면 사용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는 해수목욕탕, 수족관용수, 양식장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의미함.

3 지열 냉난방공사의 수질검사**■ 질의내용 ■■■■**

- 개방형 지열 냉난방공사시 수질검사를 꼭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어느 용도로 수질검사를 해야 하는지?
- 혹시 수질검사를 하였으나 수질검사 초과성분이 나왔다면 지하수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에도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 답변 ■■■■

- 현행 지하수법상으로는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질검사 불합격시 현행 법으로는 "정수처리"등 수질개선을 하여야 함.

4 | 이용중지 기간의 수질검사 시행 여부

■ 질의내용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던 중 사정으로 인해 이용중지 신청 중인데 중지기간 중에 수질검사 기간이 도래하면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중지기간 동안은 수질검사 또한 재사용할 때까지 연기가 되는지?

■ 답변 ■■■■

□ 원칙적으로는 "이용중지"도 지하수의 개발·이용의 하나로 볼 수 있음에 따라 이용중지 기간중에 수질검사 기간이 도래할 경우 수질검사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나, 동 "수질검사의 실효성, 이용자의 정황, 수질검사 실시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수질검사를 연기가 가능하도록 함이 오히려 더 합목적적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동 지하수시설의 이용 재개시까지 수질검사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용 재개시에는 수질검사를 받은 연후에 이용재개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5 수질검사 대상 여부

I 질의내용 IIII

- 지하수 수질검사는 지하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하게 됩니다. 생활용수의 경우 양수능력 30톤 이상일 경우 수질검사 대상이 되는데 토출관지름이 작을 경우(예, 32 mm 이하) 수질검사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 이론 양수능력이 아닌 실 양수능력을 측정하여 30톤 이하일 경우 수질검사가 면제 될 수 있는 지 여부
- 보건위생상 지장이 없는 용도(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등)로 사용할 경우 수질검사 면제의 대상인지 여부

I 답변 IIII

- 양수능력이 일 30톤 이상인 경우 토출관직경이 작다고 하여도 수질검사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현행 지하수법에서는 이론 양수능력을 인정하고 있음.
- 보건위생상 지장이 없는 용도로 사용시 수질검사 면제가 가능하나, 준공 시에는 수질검사를 받아야 함.

관련 규정

【지하수법】

제20조(수질검사 등) ①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질의내용 ■■■■

- 지하수(일반가정집, 공동주택)에서 지하수원수가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정수처리(정수기)를 이용해서 수질검사를 해도 되는지 여부
- 음용수 수질검사는 부적합이나 생활용수(비음용)로는 적합한 지하수를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생활용수(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얼마 전 지하수 개발을 하여 수질검사를 의뢰 하였는데 식당이라 음용수 기준으로 하였으나 질산성질소가 기준치인 10mg/l보다 높은 14mg/l가 검출된 바, 용도별 수질검사 미달시 조치 사항 및 방법과 정수기 사용 여부
- 지하수를 개발한 후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용수용 지하수로 개발·이용허가를 득하였으나 향후 본 지하수공을 음용수로 이용하고자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예정임. 생활용수용 지하수공을 음용수로 변경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 수질분석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지하수원수에 대한 음용수 수질분석 결과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 정수처리 시설을 통하여 채수한 물이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다면 본 지하수공을 음용수로 변경하여 이용가능한지 여부

■ 답변 ■■■■

-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상 정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에는 음용으로 사용가능하나 상수도미보급지역 등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또한 정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지하수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개인적인 정수처리시설 설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의 「먹는물관리법」 담당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람.

관련 규정

【지하수법 시행령】

제15조(수질불량의 정도)

① (생략)

②법 제10조제1항제7호 및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수질불량"이라 함은 지하수의 수질이 개발·이용 용도에 부적합한 정도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생활용수 등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등 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상 정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수질은 정수처리한 후의 수질이 개발·이용에 부적합한 정도인 경우를 말한다.

제30조(수질검사전문기관 등)

①·② (생략)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이용중지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정수처리(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상 정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보완

7

정수처리(2)

■ 질의내용 ■■■■

- 호텔(○○광역시 소재)에서 생활용(비음용)으로 허가를 받아 정수처리 후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 비음용을 음용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사항의 변경에 사항에 해당되어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을 한 후에 가능함. 지하수법 시행령 제15조(수질불량의 정도)에 의하면 지하수를 정수처리하여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생활용수 등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등 지하수의 개발·이용 목적상 정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호텔에서 생활용(비음용)으로 허가를 받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정수 처리후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37조제1호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 해당되며, 정수처리후 음용수로 용도 변경 사항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가능한 사항임.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V

시공업 / 영향조사기관 / 정확업

1 시공업등록 - 기술능력(1)

■ 질의내용 ■■■■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신청에 있어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별표4]에 의거 기술능력자를 보유하여야 등록신청이 가능하나, 민원인이 굴삭기운전기능사를 기술능력보유자로 신청한 관계로 굴삭기기능운전사를 굴착기기능운전사로 보아 동일기술능력으로 인정하여 등록신청을 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별개의 자격증으로 보아 반려하여야 하는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정사면허증이 [별표4] 1항 가목하단 「건설기술관리법」 해당분야의 초급이상의 기술자로 보아 시공업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답변 ■■■■

- 굴삭기운전기능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시공업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

2 시공업등록 - 기술능력(2)

■ 질의내용 ■■■■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에 대하여 2005년 법개정 이전에는 "굴착·시추기능사보"의 자격도 기술능력에 포함이 되었었는데 기능사보 제도가 폐지되면서 개정된 법에는 "굴착·시추기능사보"가 빠진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기능사보의 자격으로 기술인력을 변경할 경우 가능한지 여부
- 현재는 기능사보의 자격증이 기술능력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존 기능사보로 등록된 인력들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 답변 ■■■■

- 1998.5.9 「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추기능사보가 폐지되었으며, 동법에 따라 개정 전 및 경과기간에 시추기능사보 자격을 취득한 자 중 2001.12.31까지 해당 직무분야에 계속 재직한 경우에는 기능사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가 1998.5.9 ~ 2001.12.31까지 해당직무에 계속 재직하였으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기능사 자격을 부여받아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시 제출하시기 바라며, 현행 지하수법에서는 "시추기능사보" 자격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규정에 의해 "지하수 관련분야의 공사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 단체로부터 그 사실여부를 확인 받은 자"는 기술인력으로 가능함(여기서 사업자체는 한국지하수협회를 의미함).

3 시공업등록 - 기술능력(3)

I 질의내용 IIII

-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4]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제32조제3항 관련)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시공·수자원개발·상하수도·농어업 토목·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목·응용지질·지하수 기사, 토목·굴착·지하수 산업 기사, 굴착·시추·공기압축기운전·기중기운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초급 이상의 기술자에 해당하는기술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 토목학과는 많은 대학에 개설되어 기술인력 확보에 별 문제가 없지만, 응용지질학과, 지하수학과는 국내에 개설된 사례가 전혀 없음. 따라서 각 대학에서 응용지질과 지하수분야와 관련된 학과는 지질학과, 자원공학과, 자원환경공학과, 지질환경공학과, 국제자원개발학과 등으로서 여러 명칭으로 개설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므로 상기의 관련학과 전공자도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에 종사할 수 있는지 여부

I 답변 IIII

- 해당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로 시공업 기술능력을 판단할 시에 해당학과가 토목, 응용지질, 지하수 등 해당분야의 학과인지에 대해 최근에는 학과 명칭이 대학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학과의 교과과정, 학위분야, 진로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해야 함.

4 시공업등록 - 자본금(1)

■ 질의내용 ■■■■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개인 업체로서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자산평가액산정방법에관한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407호)」에 의하면,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서 또는 보증금 예치를 규정한 관계문서에 보증금으로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관할 구청에서는 자산평가에 대한 방법으로 보증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자기 소유도 아닌 시설이나 장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중 「자산평가액산정방법에관한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407호, '97.12.15)」을 살펴보면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감정평가 대상은 "시설·장비, 차량운반구·기기 또는 비품, 사무실·창고와 토지"만이 해당되나 "임차 사무실·창고 또는 시설·장비 등의 보증금"은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감정평가 대상이 아님.

관련 규정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건설교통부 고시 제407호, '97.12.15)】

1.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 가. 지하수법시행령 제32조제3항 별표4의 기준에 의하여 보유한 시설·장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대여 시설·장비를 포함함
- 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영위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운반구·기기 또는 비품
- 다. 영업용 사무실 및 창고. 단,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영위에 직접 사용되는 사무실 또는 창고에 한함.
- 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단,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영위에 관련된 사무실·창고의 대지 또는 시설·장비 등의 보관을 위한 토지에 한함.
- 마.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유한 현금
- 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영위를 위해 지급한 임차 사무실·창고 또는 시설·장비 등의 보증금

관련 규정

【자산평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지침】 (계속)

2. 자산평가액 산정방법

가. 시설·장비, 차량운반구·기기 또는 비품, 사무실·창고(상기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중 “가”, “나”, “다” 목에 해당되는 자산)

-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대여시설·장비의 평가액은 대여시설·장비 이용자가 대여회사에 지급할 것을 약정한 계약기간내의 상환액을 기준으로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할인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3) 영업용사무실 및 창고의 평가에 있어 2인 이상이 각각 다른 업종을 위하여 공동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공부(등기부등본 등)상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평가한다.
- 4) 영업용사무실 및 창고의 평가에 있어 1인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위하여 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용사무실 및 창고(토지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기타 자산의 업종별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 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법에 따라 안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토지(상기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중 “라” 목에 해당되는 자산)

-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통해 한다.
- 2)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있어 2인 이상이 각각 다른 업종을 위해 공동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목 3)”의 방법을 준용하며, 1인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위해 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목 4)”에 의한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면적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공시지가를 안분한 금액으로 한다.

다. 현금(상기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중 “마” 목에 해당되는 자산)

-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별표4의 기준에 의한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산평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현금 보유 증명은 은행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임차 사무실·창고 또는 시설·장비 등의 보증금(상기 평가대상자산의 범위 중 “바” 목에 해당되는 자산)

- 계약서 또는 보증금 예치를 규정한 관계문서에 보증금으로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증금이 예치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시공업등록 - 자본금(2)

■ 질의내용 ■■■■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등록하고자 하는데, 자산평가 산정방법에서 개인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시 토지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자산평가액에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 현금은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라 했는데 여기서 자본금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혹시 개인이므로 3천만원을 말하는 것인지?
-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본금이 3천만원 이상이면 자본금 부분에서 이로써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지하수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 신청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일반 주거용 아파트도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중 「자산평가액산정방법에관한지침(건설교통부 고시 제407호)」에 의하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시 토지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영위에 관련된 사무실, 창고의 대지 또는 시설, 장비 등의 보관을 위한 토지에 한함.
- 자본금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제4항 [별표4]에 의해 개인은 자산평가액 3천만원을 의미함.
-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자는 자본금이 기준을 충족할 때에는 이로서 갈음할 수 있음.
- 위 지침에 의하면 사무실도 자본금 평가대상중의 하나이며, 사무실은 통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의 사무실이 이에 부합된다 할 것임. 일반 아파트가 사무실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며 주된 사무소의 주소지를 일반 아파트로 하는 경우의 시공업 등록은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함.

6 시공업등록 - 자본금(3)

I 질의내용 IIII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에 있어 법인인 경우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업종별로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법인 자본금 205,000,000원이며, 전문건설 토공사업 면허를 위한 자본금 200,000,000원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금 5천만원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I 답변 IIII

-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규정에 의해 법인의 자본금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의미함.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공사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무소의 등록을 한자 등의 경우에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본금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추가적인 자본금을 확보해야 함.

7 시공업등록 - 자본금(4)

■ 질의내용 ■■■■

- 상하수도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자본금 5천만원이상인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등록시 상기 자본금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상하수도공사업의 기술인력자로 등록이 된 토목기사가 지하수개발·이용시 공업 등록시 기술인력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 양쪽의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자본금을 합산한 금액이상이 필요하며, 한편 기술인력도 각각 필요함

8 시공업등록 - 시설 및 장비(1)

I 질의내용 IIII

- 동일한 대표자가 경기도("A"사)와 강원도("B"사)에 각각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체를 신규 등록하고자 할 때 기타 자격요건에 적합하나 시설장비를 "A"사에서 "B"사가 임대사용 한다고 했을 때 지하수법상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 또는 임대관계가 성립되고 신규 등록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I 답변 IIII

- "A"라는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체가 "B"라는 별개의 상호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를 신규 등록하고자 할 때 대표자가 동일하다면 이중등록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현행 지하수법에는 시설 및 장비의 임대 관해서는 착정장비의 소유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외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9 시공업등록 - 시설 및 장비(2)

■ 질의내용 ■■■■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관련) 제3의 "나"의 규정 및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기준(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관련) 제2의 "라"의 규정에 의거 장비를 임차한 경우와 관련하여 원소유자인 임대업자가 1대의 장비(착정기, 공기압축기, 수위측정기, pH 측정기, 온도측정, 전기전도도측정기 등)를 몇 대까지 임대 가능한지?

■ 답변 ■■■■

- 현행 지하수법에는 시설 및 장비의 임대에 관해서는 착정장비의 소유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보고 있음. 다만, 장비의 소유자가 1대의 장비를 여러 명에게 임대가 가능한지 여부는 장비 활용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됨.

10 불법 지하수개발 시공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주체

■ 질의내용 ■■■■

- 우리 군에서 타 시·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가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 개발을 하였을 경우 지하수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과태료)을 하여야 하는데, 우리 군에 등록된 업체가 아니라 타 시·군에 등록된 업체이기에 행정처분 주체가 우리 군이 되어야하는지 아니면 등록된 시·군에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 답변 ■■■■

- 본 건 행정처분의 주체는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를 받아야 하는 시장·군수가 됨.

(유사질의)

- 지하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A"시에서 등록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가 "B"시에서 위법행위로 "B"시에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었을 경우 과태료 처분은 어느 관청에서 처분해야하는지?

(답변)

- 위법행위를 적발한 그 지역의 관청, 즉 이 경우는 "B"시가 해당됨.

11 시공업등록의 취소

■ 질의내용 ■■■■

- 지하수법 제25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시공업 등록기관중 기술인력 변경사항이 있을 후 1개월이 지나서 변경신고를 하였는데, 이 때 지하수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는 바, 이 기준에 의거 무조건 등록취소를 해야 하는지(당연취소 사유에는 해당 없음), 아니면 등록취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변경등록을 해도 무관한지 여부

■ 답변 ■■■■

- 질의내용으로만 보았을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나, 지하수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러 가지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동법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를 따로 명시한 동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일시적인 기술인력의 미달의 이유로 동 시공업의 등록을 바로 취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비록, 일시적으로 기술인력이 미달되어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었다 하나 취소권한을 가진 관할 지자체에서는 ‘기술인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게 된 사유,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동 시공업체가 그동안 시공한 공사의 부실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련 규정

【지하수법】

- 제25조(등록의 취소 등) ①시장·군수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6호·제7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12 시공업 변경등록

■ 질의내용 ■■■■

- 2005.0.24 개인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을 한 사람이 법인으로 변경 등록할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양도신고를 하는지 여부

■ 답변 ■■■■

- 양도양수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13 시공업 변경등록 - 대표자 변경(1)

■ 질의내용 ■■■■

- 법인으로 상호를 득하여 영업을 하고 있던 중 법인이사들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법인 등기부등본을 법무사를 통하여 변경하였음. 지하수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대표이사, 기술자, 법인 사무실 주소 등에 관하여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시·군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새로운 비상임이사가 발생할 경우에 관할 시·군청에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변경 사항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위 사항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 및 시정 명령이 있는지?
- 이사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관할 시·군청에 통보하면 되는지?

■ 답변 ■■■■

-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및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대표자 또는 임원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할 경우에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바, 비상임이사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비상임이사가 아닌 상임이사의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변경 신청하여야 함.
- 귀 회사 자체의 이사 변경에 대해서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변경등록(임원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한 후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및 지하수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변경등록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14 시공업 변경등록 - 대표자 변경(2)

■ 질의내용 ■■■■

- 개인이 ○○도청으로부터 2000년 초에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을 인가 받아 영업 중 2002년 초에 법인으로 설립/등기하여 영업하다가 2002년 말에 위의 사실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에서 시·군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현재까지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을 개인으로 인가 받아 변경등록 없이 법인체로 영업을 하면 지하수법 제22조에 저촉되는지 여부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을 개인으로 인가 받아 현재 법인등기부상의 부친이 자식에게 대표이사직 및 상호를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답변 ■■■■

- 지하수법 제37조의3제10호 규정에 의해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 기존 법인이 회사가 폐업 등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이 말소된다면, 지하수법 제24조 규정에 의해 양도양수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함.

관련 규정

【지하수법】

제37조의3(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9. (생략)
10. 제22조제1항·제27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업무 또는 지하수정화업을 영위한 자

15 시공업 변경등록 - 대표자 변경(3)

■ 질의내용 ■■■■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운영하다 대표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개인도 대표자 변경이니 등록변경으로 신청해도 되는지? 아니면 지하수법에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양도 양수로 해야 되는지?

■ 답변 ■■■■

- 개인업체에서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 신고를 하면 됨.

16 시공업등록 - 공동명의 가능 여부

■ 질의내용 ■■■■

- 저희 군내에 있는 □□지하수개발은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을 등록하여 개인 △△△이 운영하던 중 비법인인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타인과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지하수개발의 지분의 1%, 상대방은 99%의 지분을 갖고자 하는데 법인이 아닌 개인도 지분을 분할하여 공동명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변경등록을 할 수 있는지?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공동명으로 가능하다고 함)

■ 답변 ■■■■

-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은 지분분할 등록이 불가능함.

17 시공업등록 - 등록말소

■ 질의내용 ■■■■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 조회 과정에서 관할 세무서에 업종을 폐업한 사실이 조회되었으며, 민원인과 전화 결과 세금관련으로 세무서에서 강제 폐업되었으며 세금을 정리한 후 다시 등록토록 할 것이라고 하는 바, 이 경우 무단으로 등록 말소조치를 하면 되는지?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허가를 자진반납 할 경우와 직권 폐업할 경우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 답변 ■■■■

- 귀하가 질의한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한 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취소와 관련하여서는 지하수법 제25조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등록취소가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제25조 제1호, 제6호, 제7호 및 제1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연히 취소하여야 함.
- "직권폐업"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알아야 할 것이며 또한 그 주체가 누구인지가 정확하지 않아 답변이 곤란하나, 지하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에 의한 등록취소를 말한다면 "스스로 시공업을 반납하는 자진 반납"과 구분하여 "등록취소"는 지하수법 제25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만 등록취소가 가능함.

관련 규정

【지하수법】

제25조(등록의 취소 등) ①시장·군수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6호·제7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때
4. 삭제
5. 삭제
6. 제2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에 제23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당해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8. 삭제
9. 삭제
10.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1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부실하게 한 때
12. 「국세징수법」·「지방세법」 등 관계법률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구가 있는 때

18 시공업등록 - 재등록

■ 질의내용 ■■■■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다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을 하여 영업을 계속 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 받을 시 처분을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기간이 경과하여야만 다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이 기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 답변 ■■■■

- 귀하가 지하수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이 취소되었다면, 지하수법 제2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이내에는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을 등록할 수 없음.

관련 규정

【지하수법】

제25조(등록의 취소 등) ①시장·군수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6호·제7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 4. (생략)
5.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9 시공업 폐업신고

| 질의내용 ||||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2009.5.25)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던 중 사정이 생겨 폐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폐업신고서 양식이 이전에는 별지 "제29호 서식" 지하수법 제2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 작성하면 되었으나, 현재는 관련 조항이 삭제된 바, 시공업체의 자진반납(폐업)을 시군구청에 할 수가 없는지?

| 답변 ||||

-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과 함께 관할 시·군에 제출하시면 되며,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소에 변경등기 및 말소등기를 한 후 말소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과 함께 관할 시·군에 제출하시면 됨.
- 지자체에서는 폐업처리 후 사업자에게 알려주시고 지역개발행정(지자체 지하수관리프로그램)의 업체관리부분에서 해당업체를 폐업처리 하면 됨.

20 주된 사무소의 이전 관련

■ 질의내용 ■■■■

- 관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가 얼마전 사무실 주소를 관외로 이전했다가 다시 관내로 이전해왔는데 행정적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동 질의와 관련하여 지하수법 제25조제1항제3호의 해석은?

■ 답변 ■■■■

- 관외로 이전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전해 간 지역의 관할 관청에 주된 사무소의 이전으로 변경등록 하였어야 하며, 그 이후 다시 관내로 온 사항에 대해서도 변경등록 신청하였어야 함.
-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할 사항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하수법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 시공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관련 규정

【지하수법】

제22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①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등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2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① ~ ③ (생략)

④법 제22조제1항 후단에서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또는 명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략)

4. 주된 사무소의 이전

제25조(등록의 취소 등) ①시장·군수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6호·제7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때

21 시공업의 영업 범위

■ 질의내용 ■■■■

-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용 지하수개발을 준공 한 후 물을 이송시키기 위해
착정되어 있는 지하관정에 수중모터펌프 및 양수파이프 등의 기기를 신규
설치하는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에 해당되
는지 여부
- 만약 해당된다면 펌프 및 양수파이프 등 지하수 이용시설 관련 기기를 설
치할 경우 해당 공사는 반드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만 시공해야 되는
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및 기계설비공사업자(=해당 유사관련 공사업)
도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 지하수법 제2조에 의하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이라 함은 지하수개발·
이용을 위한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이며, 지하수법 제22조제3항에 의하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아니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의 범위 관련하여서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제4
항에서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굴착, 동력장치 설치, 출수장치 및 적산유량계, 수위측정관 설치, 지
표하부보호벽, 상부보호시설 등이 해당됨(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2] 지
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하
수개발·이용을 위한 수중모터펌프, 양수파이프, 수량계, 출수장치, 수위측
정관 등의 공사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지하
수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는 예외임.

22 정화업등록 - 기술능력(1)

| 질의내용 ||||

- 지하수정화업 등록기준에서 기술능력항목 [별표7]의 "나"항목의 경우 해당분야의 특급기술자 1인 이상의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특급기술자를 관련분야 공학박사학위 소지자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이와 유사한 수질방지시설업 등록기준의 경우, 수질관리기술사를 수질전공분야의 박사학위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 지하수정화업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 지하수정화업의 등록기준중 1.기술능력 "나'목에서 특급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특급기술자를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특급기술자 인정범위를 기술사로 정하고 있으며, 박사학위 소지 등 학력에 대하여는 인정범위를 두고 있지 않음.

23 정화업등록 - 기술능력(2)

■ 질의내용 ■■■■

- 지하수정화업 등록기준의 기술능력에서 1)지질및지반기술사 또는 해당분야의 특급기술자 2)수자원개발·상하수도·수질관리·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해당분야의 특급기술자 상기와 관련하여 기술사 자격증이 없어 특급기술자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지질공학을 전공후 건설회사에서 토목경력 특급기술자로 경력 신고 된 인력이 지하수정화업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위 질의 관련 수질환경 기사자격증 취득후 토목경력 특급기술자로 경력 신고된 인력이 지하수정화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 ■■■■

- 첫 번째 질의에 대하여 특급기술자의 해당분야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전문분야가 지질 및 지반분야를 의미함.
- 두 번째 질의에 대하여 특급기술자의 해당분야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전문분야가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수질관리 분야를 의미함.

24 정화업등록 - 기술능력(3)

| 질의내용 ||||

- 지하수법 시행령 제39조 관련 [별표7]의 제1호(기술인력) 나목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수자원개발·상하수도·수질관리·토양환경기술사 1인 이상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특급기술자 1인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수질환경분야 특급기술자도 [별표7] 제1호 나목에 의한 해당분야 특급기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중 [별표7]의 제1호 나목에 의한 해당분야 특급기술자에서 '해당분야'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직무분야(전문분야)중 지하수업무와 관련 있는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지질및지반, 수질관리, 수질환경' 분야가 해당된다고 하겠습니까만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서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25 | 영향조사기관등록 - 기술능력(1)

■ 질의내용 ■■■■

- 현재 본인은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을 운영 중이며 2월 27일 갑자기 퇴사자가 발생하여 퇴사조치를 시행한 후 계속적으로 신입사원을 총원하려 노력하였으나 3월 9일경에 직원 총원이 이루어져 3월 12일에 신입사원을 입사조치하고 4대 보험에 가입케 하였음. 그런데 해당 관청에서는 2월 27일부터 3월 11일까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기준인 기술인력 3명을 만족하지 못했으므로 지하수법 제29조제1항의2에 의거 등록취소가 되어야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인력총원이라는 것이 퇴사자가 발생한 후 바로 총원되면 좋겠지만 원활이 일이 수행되지 못해서 인력총원 기한인 1개월 이내에 기술인력을 총원하게 되었으므로 등록취소까지 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답변 ■■■■

- 기술인력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29조에 의해 취소할 수 있거나 지하수법 제37조의3제10호 규정에 의해 벌칙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사항을 적극소명하고 구체적인 것은 사실관계 및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당해 행위의 허가권자인 시장 또는 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26 | 영향조사기관등록 - 기술능력(2)

| 질의내용 ||||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시설 및 장비는 임대 계약한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장비의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변경등록하지 않은 경우 관청에서 미리 공문으로 통보를 해야 하는지?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및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시 사무실을 소재지 관내에 설치해야 하는지, 관외에 설치하여도 가능한지?

| 답변 ||||

- 임대기간 만료된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 관청에서 미리 해당업체로 통보할 의무는 없음.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및 지하수영향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등록하여야 함. 또한 지하수법 제37조의3제10호 규정에 의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27 | 영향조사기관등록 - 기술능력(3)

■ 질의내용 ■■■■

- 지하수 영향조사기관 등록기준에서 응용지질(지질및지반)분야 박사가 해당 분야의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와 일반 학위중의 하나인 '박사'학위 소지자와는 구분하여야 할 것임. 동일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간주하진 않음. 다만, 대학연구소의 '지질및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등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동일분야, 즉 '지질및지반,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 분야의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인정하여 줌.

28 등록 기준

■ 질의내용 ■■■■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과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후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에 미달시 지하수법 제2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와 다른 조항일 경우 해당 법적 조항은?
- 한 개의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기술능력과 지하수관련 기술능력을 각각 구별("A"사람과 "B"사람 중 "A", "B"사람이 「건설산업기본법」상 기술능력인지 지하수관련 기술능력인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예 : 국민연금공단 사업장가입자명부, 건설기술인협회 발급 확인서류 등)

■ 답변 ■■■■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의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하수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의 취소를 할 수 있으며, 다른 규정은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기술능력은 건산업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인협회 등에 등록을 할 경우로 볼 수 있고, 지하수법상의 기술능력은 지하수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관할 시·군·구에 등록할 경우로 볼 수 있음.

관련 규정

【지하수법】

제25조 (등록의 취소 등) ①시장·군수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6호·제7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9

중복 등록

■ 질의내용 ■■■■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기술능력의 중복가능 여부 또는 지하수정화업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기술능력의 중복가능 여부
- 보링·그라우팅면허를 가진 기술인력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이중등록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토목공사업의 자본금과 지하수시공업의 자본금을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과 병행하여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시에도 각각 별도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하수정화업과 병행하여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시에도 각각 별도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 보링·그라우팅 면허를 가진 업체의 기술 인력으로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에는 이중등록이 가능합니다만,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시에는 이중등록이 불가능함.
-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4]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본금으로 같음할 수 있음.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VI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 징수

1 이용부담금 부과 기준

■ 질의내용 ■■■■

-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계량기를 통한 부과와 담당공무원이 임의적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준없이 부과한 것이 아닌지?

■ 답변 ■■■■

-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제정 이전의 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이용자의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기 위해 지자체 나름의 기준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부 소관이 아닌 관계로 답변하기 곤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하수이용부담금 제정 이후의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유량계 설치를 통해 부과징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제거하거나 하여 실제 사용량 측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정하는 별도의 부과기준이나 사용자가 허가 또는 신고시 기재했던 이용량을 우선 적용하여 사용량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설치된 유량계를 제거하는 등 적법한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됨.

2 | 이용부담금 부과대상 - 비상급수용 시설

■ 질의내용 ■■■■

- 지하수법 제30조의3 규정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면제되는데, 개인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관에서 민방위 급수용으로 지정하였다면 이 경우 지하수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답변 ■■■■

- 지하수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거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개인이 개발·이용하는 지하수가 민방위급수용으로 지정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관련 규정

【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시장·군수는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2.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수도법」 제3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4. 「하천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이용부담금 부과대상 - 온천수

■ 질의내용 ■■■■

- 지하수 조례 제정시 지하수관련 사업비 등 조달을 위해 반드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세워야 하는지?
- 지하수이용부담금 대상에 온천수도 부과해야 하는지?

■ 답변 ■■■■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 조례에 반영하여 본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온천법」에 의해 인·허가된 시설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대상에서 제외됨.

4 | 이용부담금 부과대상 - 공동주택

■ 질의내용 ■■■■

□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제3호에 의하면 "생활용수 중 가정용(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으로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는 지하수이용부담금 제외 시설" 인데 이 중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과 같은 경우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하수는 가정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 만약 공동주택이 부과 대상이라 하면 다음 경우에 대한 해석은?

예1) 상수도 보급지역내 2층 일반주택으로 각각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건물의 경우 가정용으로 신고되어 부과제외 대상이나, 지하수로 생활을 영위하는 3층 빌라 같은 경우 공동주택으로 신고 되어 부과대상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부과를 해야 하는지?

예2) 일반주택건물에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건물이 있으며, 이 경우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가정용으로 인정함(물론 이곳은 상수도 보급지역입니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각 개개인 생활영위는 상수도를 쓰고 있으며, 지하수는 아파트 내에 보급이 가능한 곳이 2시간 정도 보급을 해서 각각 아파트 내 가정에서 음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 답변 ■■■■

□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등에 설치된 지하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시설로 공동주택용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됨

□ 예1)의 경우는 공동주택용으로 구분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되나, 필요한 경우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지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하시기 바라며 예2)의 경우도 예1)의 경우와 동일함.

5 이용부담금 부과대상 - 간이급수시설

■ 질의내용 ■■■■

-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제외대상에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서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안쪽 토출관 지름 50 mm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로 지하수 개발·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라 함은 배수지에서 수압이 미치지 못해 상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말하는 것이 맞는지?
- 위에서 말하는 간이급수시설은 일반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도법」 및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마을상수도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
- 우리 구의 예를 보면 상수도의 수압이 미치지 못해 상수도를 놓지 못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며, 이런 곳이 일반가정이 아니라 교회, 절, 송신소 같은 시설이 위치해 있는데, 부과대상인지 여부

■ 답변 ■■■■

- 상수도미보급지역은 「수도법」에서 제시된 수도시설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자세한 내용은 수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람.
- 상수도미보급지역에서 간이급수시설은 일반적으로 「수도법」 제3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마을상수도 등을 제외한 시설로 지하수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상수도미보급지역에 위치한 교회, 절, 송신소 등의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여부는 사실관계 및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당해 행위의 허가권자인 구청장께서 판단하시기 바람.

6 | 이용부담금 부과대상 - 학교 및 부속시설

■ 질의내용 ■■■■

- 2005.12.1 지하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2007.7.1부터 본 사업장(○○대학교병원)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는데 안내문의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 항목 중 "학교 및 부속시설(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 항목에 본 사업장이 해당되는지 여부. 본 사업장(○○대학교병원)은 학교(○○대학교)와 같은 번지(부지)에 있으며, 같은 법인 소속이므로 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

-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부속시설"이라 함은 학교에 부속된 "수목원", "농·축산 실습장" 등 비영리 시설을 말하는 바, 귀 ○○대학교병원은 해당되지 않음. 또한, 귀 대학교병원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 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귀 ○○대학교병원은 지하수법 제30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부담금 부과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 규정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법 제30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7 이용부담금 부과대상 - 유치원 등

■ 질의내용 ■■■■

- 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 ■■■■

-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해당되지 아니함.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받고자 하실 경우 관할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로 질의하시기 바람.

관련 규정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법 제30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생략)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8 | 이용부담금 부과대상 - 방산업체

■ 질의내용 ■■■■

□ 당사는 국방·군사용 제품을 생산하는 방산업체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 제8호의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임. 개정 지하수법과 관할구 지하수 조례에 의거 2008.1.1일부터 지하수 개발·이용하는 자에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공문을 접수하였는데 예외내용에는 가정용, 농업용, 국방·군사용, 민방위용, 학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 명시되어 있어 당사도 상기 법률에 근거하여 예외시설에 적용되는지 여부

■ 답변 ■■■■

□ 귀하의 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수이용시설물이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회사가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인지 여부를 국방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으신 후 동 결과에 따라 해당될 경우 지자체에 통보하여 제외토록 요구하는 등 조치하기 바람.

관련 규정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국방·군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2.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 및 시험시설
3. 군용 유류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시설
4. 진지구축시설
5. 군사목적에 위한 장애물 또는 폭발물에 관한 시설
6.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 시설과 그 구성원·군속·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시설
7.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9 이용부담금 부과대상 - 관광지

■ 질의내용 ■■■■

- ○○시내 ○○관광지가 있는데 종전에는 지하수를 무료로 사용하다가 관광지내에 있는 기존의 상가들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며 시에서 통보하였는데, 관광지내에 상가들은 공공성이 강한 다중 이용시설로 분류되어 부담금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답변 ■■■■

- 동 건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제1항 각호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 규정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법 제30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생활용수 중 가정용(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으로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열냉난방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경우로서 시·군 조례로 정한 경우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VII

기 타

1 지하수 판매 등 영업 행위

I 질의내용 IIII

- 우리시 관내에서 생활용 음용수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고, 사업자 등록 후 먹는물 판매가 아닌 살수차 등을 이용하여 공업용수 및 비산먼지 방지로 영업을 하고 있는 바, 「먹는물관리법」 및 「수도법」에는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지하수법 또는 기타사항에 저촉이 되는지?
- 개인으로 지하수개발 신고(생활용)를 하고 준공필한 상태에서 (주)○○소주업체가 변경신고(신고인 및 용도변경)건이 있어 현 지하수 위치에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소주를 만드는 데 가공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반출하려고 하는데 이에 관련하여 변경대상 및 위법 여부
- 2008년 10월 ○○도 소재 특정지역 임야에 온욕센타(목욕장)를 할 목적으로 지하수개발 신고를 하고 2009년 3월 비음용(생활용수)수로 준공확인을 필한 바, 서울 등에 직영으로 온욕센타를 하기 위해 이 지하수의 반출이 가능한지 여부

I 답변 IIII

- 현행 지하수법에서 지하수의 이용은 지하수시설물이 설치된 당해 토지와 인근 토지의 이용 증대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그 지하수를 이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즉, 지하수법의 입법취지상 지하수개발 인·허가는 지하수개발·이용을 현 위치에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지하수법에서는 공적자원인 지하수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것은 물론 현 위치에서 개발한 지하수를 타 지역으로 반출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음.

2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온천법

■ 질의내용 ■■■■

- 민원인이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하던 중 변경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민원인은 온천을 개발하려고 하는 경우 지하수법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만약 「온천법」을 따를 경우 온천발견등록이 취소되면 원상복구를 명하였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하수시설로 변경하여 이용이 가능한지?
- 「온천법」을 적용받는 지역내 가정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지하수 신고할 때 처리담당부서는 온천관련부서인지 아니면 지하수관련부서인지?

■ 답변 ■■■■

- 민원인은 이 경우 지하수법 제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한 후, 「온천법」의 규정에 따라 제반 절차를 이행하면 됨. 종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온천법」상 인·허가 등 「온천법」상 제반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므로 동 신고자는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특별한 제재를 할 근거가 없음.
- 온천발견 등록 취소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함.
- 현행 지하수법 제4조 및 「온천법」 제8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동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양 법률에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온천법」에 온천공보호 지구내에서의 지하수개발허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온천담당부서에서 처리를 함이 현행 법률상으로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3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지하수 개발·이용
---	----------------------

■ 질의내용 ■■■■

- 2006.6.1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 (신고의 대상 및 기준) 제9호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하수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지하수 신고 여부가 지하수 담당부서인지 아니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부서인지?

■ 답변 ■■■■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농을 위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가 가능함을 의미하며, 지하수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면제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개발·이용자는 지하수 담당부서에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나 신고를 하고 시행해야 함.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입찰

■ 질의내용 ■■■■

- 비상급수용 지하수시설 유지관리공사 전자입찰공고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및 지하수법 제22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중 어느 법을 적용하여 입찰공고를 해야 하는지? (공사개요 : 수중모터펌프 교체공사(3-7.5마력), 6대 자외선 살균기 램프 및 정밀여과장치 필터 교체, 50개소 물탱크 청소, 50개소 지하수 수질검사 관정 에어써징, 25개소 기타 부대공 1식)

■ 답변 ■■■■

- 지하수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는 지하수법상 등록된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체의 책임하에 시행되어야 함.

관련 규정

【지하수법】

제22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① ~ ② (생략)

③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아니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 및 제9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3.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

【지하수법 시행령】

제34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의 예외)

① (생략)

② 법 제22조제3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이고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공사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중 상부보호공의 보수공사(적산유량계 및 출수장치의 교체·수리를 포함한다)
3.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

5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 질의내용 ■■■■

- 우리 군은 25개의 유인도서로 구성되어 마을상수도를 공급 중에 있으나, 물 부족으로 지하수를 개발사용중에 있으며, 지하수 개발·이용으로 지하수 고갈 우려지역과 해수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제한 하기위해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여부를 검토 중에 있음.
- 지하수법 제13조제2항 및 시행령 제21조제5조에 의하면 지하수 보전구역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시장·군수는 새로운 지하수 개발·이용행위를 금지하고자 할 경우 금지되는 지하수 개발·이용행위의 내용 및 금지기간을 고시하도록 되어있는데, 보전구역 지정 후 신규 지하수 개발을 금지 시 가정용, 일반용, 공동주택용 등 세부용도별로 제한하는 것인지? 공공용(간이상수도, 농업용등)의 지하수 개발은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으로 지정 고시 할 수 있는지?

■ 답변 ■■■■

- 현행규정상 세부용도별 제한은 없음.
- 현행 지하수법은 `지하수보전구역`지정 후 제한이 되는 것은 규모, 즉 30톤을 기준으로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으로 나누어지는 바, `공공용` 지하수란 구분 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정할 사항임.

6 기타 지하수관련 질의 사항

I 질의내용 IIIII

- ① 낙동강 지역에서 강변여과수를 개발하고 있는데 강변여과수의 취수방식이 강변둔치에 깊이 20-40 m 정도의 취수정을 설치하여 물을 취수하는 방식으로 제 생각으로는 강변여과수가 지하수에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만, 강변여과수가 지표수인지, 지하수인지?
- ② 본인 토지와 접해 있는 토지에 지하수 용량이 충분한 기존 지하수를 토지 소유자(지하수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받아 공동으로 사용가능한지?
- ③ 바닷가 횃집에서 수족관에 해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해안으로부터 50 m 이내에 해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수관정을 굴착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 ④ 지질이 표토층, 풍화암층(흑운모화강암의 풍화암), 연암층(흑운모화강암의 연암), 보통암층(흑운모화강암)이고 굴착심도가 150 m인 곳에서 나오는 물을 지하 150m 암반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I 답변 IIIII

- ① 「하천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내에서의 강변여과수 취수정은 지표수(하천수)로 간주하여 「하천법」 적용대상임.
- ②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것은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기 바람.
- ③ 지하수관정을 설치하는 것은 지하수법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④ 지하수법에서는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부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지하 150m 암반수" 등으로 언급하는 것은 개발이용자가 편의상,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짐.

본 책자는 비매품이며, 대외적으로 사용·게재할 때에는 반드시 발행처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하며,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
- 책 자 명 :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
 - 발행기관 : 국토해양부
 - 발 행 일 : 2010년 5월
 - 발 행 처 :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 427-712
TEL : (02) 2110-6313, 8410
FAX : (02) 503-7395
-
-